

“당신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당신 가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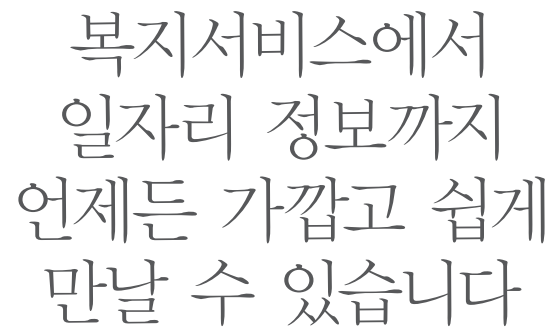
2016 “지금 힘이 든다면
주저없이 손을 내미세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당신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당신 가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책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힘들 땐 주저 없이
도움을 청하세요



1

이 책은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운 일, 혼자 헤쳐 나가려 하지 마세요

빈곤, 실직과 사업실패, 장애와 고령, 갑작스런 사고와 건강 악화까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바로 곁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책은 보다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가까이에 많은 복지서비스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 복지서비스가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고 싶다면

이 책의 288p에 수록된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를
참고하세요.

어려운 용어가 나온다면

「알려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책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보건복지콜센터(☎129)나 해당사업의 문의·신청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며,
주요기관 연락처는 328p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

3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개인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따라 370여 개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빈곤의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20p), 긴급복지지원제도(24p),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택임대 사업(27~31p), 창업자금 지원(45~46p) 등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분

생계비를 지원하며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실업급여(56p), 취업성공패키지(57p), 내일배움카드제(58p), 근로장려금(62p) 등

임신, 출산, 보육을 걱정하는 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78~81p), 보육 지원(89~94p), 방과후 돌봄(101~102p),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돈학자금)대출(111p) 등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 제도(136p),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137p),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53p) 등

노후를 걱정하는 어르신

재정적인 도움을 비롯해, 의료,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156p), 노인사회활동 지원(160p), 치아관리비용 지원(166~167p) 등

장애를 갖고 계신 분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176p), 장애인직업능력개발(186p), 장애인활동 지원(205p) 등

이 밖에 다양한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
기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 기타 특수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
들 및 그 가족분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복지서비스를 대표하는 주요사업 50



-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p)
- 2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23p)
- 3 긴급복지지원제도 (24p)
- 4 장기전세주택 임대 (29p)
- 5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 (29p)
- 6 미소금융 (45p)
- 7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51p)
- 8 실업급여 (56p)
- 9 취업성공패키지 (57p)
- 10 내일배움카드제 (58p)
- 11 희망키움통장(I, II) (60p)
- 12 근로장려금 (62p)
- 1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79p)
- 1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80p)
- 15 출산 전·후 휴가급여 (85p)
- 16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89p)
- 17 가정양육수당 지원 (91p)
- 18 아이돌봄서비스 (92p)
- 19 만 12세 이하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97p)
- 20 초등돌봄교실 (101p)
- 21 지역아동센터 지원 (101p)
- 2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02p)
- 23 국가장학금 (106p)
- 2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111p)
- 25 건강보험 제도 (136p)
- 26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37p)
- 27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138p)
- 28 의료급여 제도 (141p)
- 29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142p)
- 30 건강검진 제도 (148p)
- 3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53p)
- 3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53p)
- 33 기초연금 제도 (156p)
- 34 주택연금 제도 (158p)
- 35 노인 사회활동 지원 (160p)
- 36 치매검진 지원 (164p)
- 37 노인틀니 지원 (166p)
- 38 노인임플란트 지원 (167p)
- 39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172p)
- 40 장애인연금 (176p)
- 41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186p)
- 42 장애인 일자리 지원 (189p)
- 43 장애인 활동 지원 (205p)
- 44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216p)
- 4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43p)
- 46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45p)
- 47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48p)
- 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257p)
- 49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264p)
- 50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지원 (277p)

알려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함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원/월)	162만 4,831	276만 6,603	357만 9,019	439만 1,434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원/월)	520만 3,849	601만 6,265	682만 8,680	764만 1,095

※ 9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만 2,415원씩 증가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29%)	47만 1,201	80만 2,315	103만 7,916	127만 3,516	150만 9,116	174만 4,717	198만 317
의료급여 (중위소득40%)	64만 9,932	110만 6,642	143만 1,608	175만 6,574	208만 1,540	240만 6,506	273만 1,472
주거급여 (중위소득43%)	69만 8,677	118만 9,640	153만 8,978	188만 8,317	223만 7,656	258만 6,994	293만 6,33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81만 2,415	138만 3,302	178만 9,509	219만 5,717	260만 1,925	300만 8,132	341만 4,339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기준 219만 5,717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함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달 소득금액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작성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원/월)	164만 7,000	316만 4,000	450만 8,000	516만 1,000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원/월)	544만 5,000	573만	601만 4,000	629만 9,000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동에 거주하면서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2015년 4인가구 기준으로 작성

구분	3인가구 이하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금액(원/월)	473만 4,600	522만 4,640	556만 20





복지는 쉽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복지로에서 한번에! www.bokjir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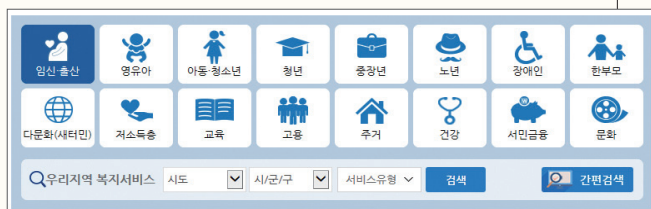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는 일도, 신청하는 일도 어렵거나 번거롭지 않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면 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사회보장정보 360여 종, 지자체 서비스 12,000여 종, 이 모든 복지정보를 연령별, 상황별로 분류하여 한눈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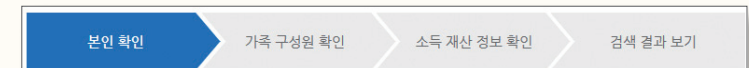
▶ 간편검색

연령, 가족특성, 필요한 지원 등 간단한 항목 선택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상세검색

상세정보 입력 또는 본인 확인을 통한 자동 정보제공으로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 4종

온라인신청

아래의 신청 전 주의사항 및 서비스별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생계지원 서비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20
-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24
-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27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39
-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49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56
-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57
-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64
-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65
-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70

임신·보육·교육 지원서비스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지요?

-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76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84
-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89
-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95
-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100
-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101
-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103
-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116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136
-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141
-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145
-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148
-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150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153



CONTENTS

노령층 지원서비스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156
-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160
-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161
- 치매가 걱정될 때 164
-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166
-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169
-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172

장애인 지원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176
-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178
-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182
-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186
-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193
-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198
-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205
-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212
-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214
-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 216

보훈대상자 지원서비스

국가를 위해 희생이나 공헌을 하셨나요?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220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242
-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264
-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271
-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276
- 북한이탈 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277
-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280



생계지원서비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선정기준은 이 책자 앞부분의 '알려드립니다'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만 3,516원에서 60만원을 뺀 67만 3,520원을 지급(원단위 올림)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자가거구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

①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외)
1인가구	19만 5천원	17만 4천원	14만 3천원	13만 3천원
2인가구	22만 5천원	19만 5천원	15만 4천원	14만 3천원
3인가구	26만 6천원	23만 6천원	18만 4천원	17만 4천원
4인가구	30만 7천원	27만 6천원	21만 5천원	19만 5천원
5인가구	31만 7천원	28만 7천원	22만 5천원	20만 5천원
6인가구	36만 9천원	33만 8천원	25만 6천원	23만 6천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②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200원	연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3,300원	1,2학기 분할 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31,300원	연회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그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60만원 지급. 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센터 신청

- 생계급여·의료급여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주거급여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교육급여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1544-9654)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 통화료 면제 (월 시내75, 시외75도수)] • 이동전화 기본료 월 15,000원까지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홈페이지 (www.minwon.go.kr)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1335)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구원 포함)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단, 감면은 가구당 4인 한도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홈페이지 (www.minwon.go.kr)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월 최대 8천원, 단, 교육급여대상자 월 최대 4천원)	한국전력(☎123)
문화활동비	•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요금 면제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별도 신청 없음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센터

02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소득·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만 8천원, 4인기준 329만 3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113만 1천원(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지원	62만 2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0만 2천원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교육 지원	초등학생 21만 4천원, 중학생 34만 1천원, 고등학생 41만 8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지원	9만 3천원(10월~3월/월)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단체 등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129) 신청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약·위기 가족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4인기준 316만 2천원)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 기능회복 및 역량강화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지원내용

- 초등학교 1~6학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조손가족 손자녀 및 한부모가족 자녀대상으로 학습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함께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의 생활·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사업본부(☎02-3479-7616),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1.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지원 가능 가구

2. 지원내용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합니다.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최고 30만원, 진단비 및 교육비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129)

03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주택임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과 일반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23.1~39.6㎡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기준 366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36.3~59.4㎡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공공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기준 366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지원대상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취약·노인계층,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 인근 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 부모 합계,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사회초년생	-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신혼부부	-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노인계층	-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산업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 자산기준 충족

2. 지원내용

행복주택의 80%는 젊은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20%는 취약·노인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산업단지에 공급 되는 경우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장기전세 주택 임대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20%(4인기준 62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기준주택 매입임대 등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50%(4인기준 261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 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50㎡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은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신청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1. 지원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61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61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22만원)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2.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8,000만원, 광역시 최대 6,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5,0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상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

▶ 수도권에서 전세금 8,000만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2만 7천원 수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무상 임대(단, 20세 이후에는 연 2%의 이자를 부담하며, 최장 6년 연장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신청

취약계층 주거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

2. 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최초 2년 계약)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신청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지원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공급 물량 범위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신청

04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주거환경 개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출

1. 지원대상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소유자

2. 지원내용

주택개량비용을 연 27%의 저금리로 최대 6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한도 : 단독주택 호당 6,000만원, 다가구주택 가구당 2,250만원, 다세대 주택 호당 3,00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ttp://nhuf.molit.go.kr>), 국토부(☎1599-0001)
우리은행(☎1588-5000)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88만 8,317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2. 지원내용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 하여 가구당 최대 950만원 범위 내에서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지원대상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2.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memo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그린홈)

- 1. 지원대상**
건설한지 15년이 넘는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 2. 지원내용**
세대 내부 환경개선(도배, 전등 교체, 욕실 개선 등), 주민공용시설 개량 및 보수(승강기, 장애인경사로 설치, 외벽도장 등), LED전등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자체 및 LH공사에서 자체 선정(별도 신청 없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1. 지원대상**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경로당
- 2. 지원내용**
노후된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가스담당 부서,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재생 에너지 지원

- 1.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 2. 지원내용**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신청(☎031-260-4114)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 기기 무상교체 지원

- 1.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 2. 지원내용**
백열등, 형광등 등의 일반 조명기기를 효율성 높은 LED 조명기기로 무료 교체해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에너지 바우처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

2. 지원내용

- 지원금액은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지급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규모	27,000원 X 3개월	34,000원 X 3개월	38,000원 X 3개월
총 지원금액	81,000원	102,000원	114,000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 세대별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의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 신청 가능
 - ※ 발급받은 바우처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사용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전국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자주 하는 질문

- 생계급여 수급자인 만 66세 노인으로 노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인가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가구의 난방비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장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존 연탄바우처(또는 등유쿠폰)을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 가능하니까?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등유바우처 수급자나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취약 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1. 지원대상

저소득층, 결손가정(소년소녀가장, 조손 또는 한부모가족 등), 다문화 가정, 장애인, 독거노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거주가구,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가구

2. 지원내용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및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등을 지원합니다.

※ 폼알데하이드, 집먼지진드기 등 환경성질환 유발인자의 농도를 측정·점검하여,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한 가구에 대하여 친환경벽지·장판 교체 등 실내환경을 개선하고,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

- 지자체(시·군·구청)가 해당가구를 선정하여 환경부에 추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306), 환경부(☎044-201-6763)

자주 하는 질문

- 한부모가족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아이와 동행하여 진료 전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으며,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할 경우 휴무로 인한 손실비용 일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환경성 질환이란?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생활환경 속에서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뜻합니다.

버팀목전세 자금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시)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등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5~3.1%)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수도권 1억원, 지방 8천만원 한도)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ttp://nhuf.molit.go.kr>), 국토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중소기업은행)

버팀목대출 보증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등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인 무주택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보증금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 연 0.1~0.28%로 신용보증해 드립니다.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시)

1.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대상자

-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2. 지원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연 1.5%)로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대출해 드립니다. (총 720만원 한도)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ttp://nhuf.molit.go.kr>), 국토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 우리은행(☎1588-5000)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지원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보증금의 월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까지 신용보증해 드립니다.

※ 매월 최대 27만원씩 2년간 총 648만원 한도

3. 신청방법 및 문의

우리은행(☎1588-5000)에 방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전세자금 보증

1. 지원대상

은행에서 임차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지원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 연 0.1~0.28%로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16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memo

06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생활안정 및 창업자금 지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1. 지원대상

사업장 재직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로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 일용근로자는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7.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16년, 4,300만원)

※ 건설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비적용

2. 지원내용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받지 못한 임금액을 융자해 드립니다.
- 연 2.5%,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 신청방법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대부

1. 지원대상

- 의료비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이하인 근로자('16년, 239만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 임금감소생계비 :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평
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6년 168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6년 168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총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활 자금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인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	1인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희망드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 지원대상

4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자 또는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자 및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초과자 제외)

2. 지원내용

월 최대 100만원(1인당 지원한도 1,000만원)의 생계비를 저금리(연 1%)로 대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미소금융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 2인 이상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도 지원

2. 지원내용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7천만원, 무등록사업자 500만원 이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미소금융재단 지점 신청(☎1600-3500)

햇살론

1.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

2. 지원내용

사용목적에 따라 연 10.5% 이내(보증료 포함)의 금리로 최대 5천만원 까지 대출해드립니다.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생계자금 1천만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 이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서민금융회사(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신청(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알려드립니다

- **고금리채무 대환자금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바꿔드림론

1.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 신용등급 6~10등급이며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람

2. 지원내용

제도권 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천만원까지 전환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 국민행복기금 신청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새희망홀씨

1.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2. 지원내용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을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각 은행 신청(한국이지원 ☎1644-1110)

07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행복 기금 채무조정

1.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2. 지원내용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원금의 30~50%를 감면 (특수채무자는 60~70%)하고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조정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행복기금 신청(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1.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2. 지원내용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시 최대 50%)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

08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 해소를 지원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이하의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간병·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지원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간병 또는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드립니다.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양곡할인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사랑의 그린PC

1. 지원대상

- 개인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생계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 단체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재활원 등 사회복지단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기관

2. 지원내용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하여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보급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거주지(주민등록기준) 관할 지자체 방문, 우편 신청
-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https://lovepc.nia.or.kr>)
-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알려드립니다

- 보급되는 PC 사양과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 펜티엄IV급 이상(CPU : 3.0Ghz, RAM 2GB, HDD 200GB, 모니터 LCD 17인치 이상)
-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 신청기간은 시·도에서 매년 초에 신청/접수하고 있으며, 요청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때 거주지의 시청 또는 도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시도별 담당부서 연락처는 온라인(<https://lovepc.nia.or.kr>)에서 확인가능
-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인가증 등 비영리 단체증명서

문화 누리카드 (통합문화 이용권)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6세 이상)

2. 지원내용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음반·도서 구입,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간 5만원)를 드립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사용안내-오프라인가맹점, 온라인마켓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신청(문화누리 고객센터 ☎1544-3412)

※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설의 대표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신청해야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자격신청 완료 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5년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존의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 하셔서 신청서 "재충전"에 표기하신 후 정보를 작성하시면 2016년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기한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되나요?
☞ 아닙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지원금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단, 본인충전금은 농협영업점에서 환불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만 5~18세 유·청소년

2. 지원내용

1인당 매월 7만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립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홈페이지(www.svoucher.or.kr) - 이용가능 스포츠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 시·군·구청 방문 신청(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

memo

취업지원서비스

일 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 자리를 원할 때
- 여성이 일 자리를 원할 때
-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 청년이 일 자리를 원할 때



01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 실업급여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1.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회사 사정 등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1일 40,176원~43,000원, '15.12월 기준)

3. 신청방법 및 문의

퇴사 후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1350)

알려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02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취업훈련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1. 지원대상

• I 유형 : 만 18세~64세 미취업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4인기준 263만원) 이하인 가구원,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 II 유형 :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층, 만 35세~64세의 미취업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기준 439만원) 이하인 중장년층

2.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최대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단계) 취업상담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 - I 유형 : 15만원 ~ 25만원 지급 - II 유형 : 15만원 ~ 20만원 지급
(2단계) 취업의욕, 취업능력 증진	-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00 ~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 (I 유형 : 자부담 면제, II 유형 : 10 ~ 20% 자부담) 2단계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급
(3단계) 집중취업알선	I 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00만원(취업 후 1개월 근속 시 20만원, 3개월 근속 시 30만원,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급)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1350)

내일배움 카드제

1.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예정자
- 연간소득 8천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2. 지원내용

- 1년 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의 50%~90%(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 전액)를 지원합니다.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하는 경우에 훈련 장려금(월 최대 11만 6천원)을 지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해 드리며, 훈련적합성 및 지원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 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단위기간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훈련수강 중 취·창업을 한 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 HRD-Net에 훈련종료 후 14일 이내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사람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1350)

자주 하는 질문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03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일자리 마련

저소득층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활근로

1. 지원대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자활근로사업단이란?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단 등과 같이 기술습득을 통해 취·창업이 가능한 사업단으로 전국 247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지원대상

미취업자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3. 신청방법 및 문의

일모아 홈페이지(www.ilmoa.go.kr)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조회 한 후 관련기관에 문의 후 신청

04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목돈마련 및 장려금 지원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희망키움통장 (I, II)

1. 지원대상

- I 유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4인기준 175만 6,574원)의 60% 이상인 가구
- II 유형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19만 5,717원)의 60%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 I 유형 :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II 유형 :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10만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을 지원합니다.
※ 3년 동안 통장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 I 유형 : 본인 저축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월 40만원 → 3년 후 약 1,440만원
- II 유형 : 본인 저축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 후 72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내일키움 통장

1. 지원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단 제외

2. 지원내용

매월 5~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1 매칭),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에 따라 1:1, 1:0.5 또는 1:0.3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원)의 합산금액을 지급합니다.

※ 본인저축 10만원 + 내일근로장려금 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1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8만원 = 월 38만원 → 3년간 약 1,37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역자활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memo

근로장려금

1. 지원대상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가구로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50세 이상인 자

※ 다만, 소득·재산·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

* 지원내용 총소득 기준금액 참고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이고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가구 (재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

2. 지원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2,500만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21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
총소득 기준금액 ('15년 기준)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70만원	170만원	21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세무서 신청
국세청 콜센터(☎126)

자녀장려금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이고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가구 (재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

2. 지원내용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의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5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세무서 신청
국세청 콜센터(☎126)

자주 하는 질문

● 소득 가구에도 지급되나요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05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 교육훈련 및 능력 개발 기회제공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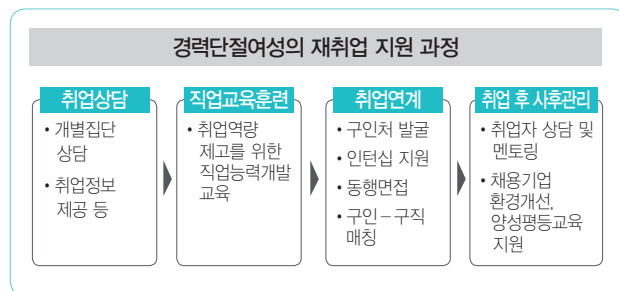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1. 지원대상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지원내용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로 문의 후 신청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고

06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에게 사회공헌활동과 재취업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1. 지원대상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지원내용

업종별로 지정된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신청(☎1350)

정년연장 지원

1. 지원대상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3년 연장하면 1년간,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 정년을 3년 이상 연장하면 2년간,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신청(☎1350)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1. 지원대상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후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1년~3년 동안 재고용하면 6개월간, 3년 이상 재고용하면 1년간, 재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신청(☎1350)

임금피크제 지원금

1. 지원대상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지원

2. 지원내용

피크임금에 비해 10% 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원(분기별 270만원, 월별 90만원) 한도에서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1350)

장년취업 인턴제

1.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장년인 미취업자

2. 지원내용

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및 아래 기관에 신청, 고용센터(☎1350)

관할	기 관 명	전화번호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359
충부청	(사)인천벤처기업협회	☎032-260-2845
의정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031-853-6681
경기	화성상공회의소(대)	☎031-350-7962
	수원상공회의소(보)	☎031-244-3454
	용인상공회의소(보)	☎031-8020-9564
강원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3-262-2095
부산	노사발전재단 부산센터	☎051-860-1321
창원	경남경영자총협회	☎055-263-0281
울산	(주)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052-277-9491
대구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053-742-1775
포항	경북동부경영자협회	☎054-278-5142
구미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070-8895-7742
광주	광주경영자총협회	☎062-654-3427
전주	전주상공회의소	☎063-288-3012
목포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
여수	전남경영자총협회	☎061-725-7040
대전	중소기업중앙회	☎042-864-0901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1. 지원대상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2. 지원내용

창업교육, 사무공간, 상담·자문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전문성·경력·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기술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100시간 내외의 실무 중심 기술 창업교육 지원	자기부담 교육비 10 만원 내외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기술창업활동을 위한 사무공간과 교육, 상담 및 자문 등의 경영지원 프로그램 지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창업넷(<http://startup.go.kr>)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또는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042-480-4387~8)

중장년취업 아카데미

1. 지원대상

전문분야에 직업경험이 있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2.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훈련기관에서 훈련받는 경우 훈련기관에는 훈련비를,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5)

사회공헌 활동 지원

1.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이며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퇴직전문인력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지원내용

사회공헌활동 일 4시간 이상 참여시 활동비(참여수당, 교통비, 식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843),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02-6369-8987) 신청

memo

07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하고자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산업현장교육, 해외취업 및 인턴수료 등의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1. 지원대상

취업경력 1년 미만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2. 지원내용

- 사업주: 인턴기간(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원~60만원을 지급하고 인턴 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시 최대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인턴 수료하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시 195만원, 12개월 고용유지시 195만원 각각 지원
- 인턴 참여 청년: 인턴 수료 후 일정기간 근속시 제조업 생산직은 최대 300만원(그 외 직·업종은 최대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인턴 수료하고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근속시 20%, 6개월 근속시 30%, 12개월 근속시 50% 각각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청년취업인턴제홈페이지로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년취업 아카데미

1. 지원대상

-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 졸업생(34세 이하)

2. 지원내용

- 기업·사업주 단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교육비 전액지원)
- 연수 후 참여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052-714-8272)

해외취업 지원

1. 지원대상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2.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K-Move 스쿨	•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 최대 1년간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 • 교육비 등을 포함 1인당 단기 580만원, 장기 800만원 지원
해외취업 알선	• 합법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 해외취업희망자와 구인업체간 알선 지원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 만 34세 이하이고 8분위 소득(월 6,071,090원) 이하 가구원, 단순노무직 배제, 연봉 1,500만원 이상	• (지원금 우대국가) 취업 1개월 후 200만원, 취업 6개월 후 200만원 • (그외 국가) 취업 1개월 후 100만원, 취업 6개월 후 100만원 * 지원금 우대국가: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선진국분류 26개국을 제외한 국가)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후 신청(☎1577-9997)

일·학습 병행제

1. 지원대상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 병행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2. 지원내용

학습근로지원금 및 숙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052-714-8223)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1.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예정자
- 대학(2년제 포함)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 해 2월 졸업예정인 사람
- 연간소득 8천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2.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월 최대 3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는 최대 6개월간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1350)

취업사관 학교

1.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2. 지원내용

-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인성교육 및 직업진로지도 등 개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훈련비와 숙소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훈련생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1644-8000)

memo

임신·보육·교육 지원서비스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지요?

-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01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4인기준 774만원) 이하이면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2. 지원내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급합니다.

시술구분	지급금액(1회)	지원횟수
체외수정	신선배아 이식 최대 19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3회 * 신선배아만 시행할 경우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
	동결배아 이식 최대 60만원	3회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3회

알려드립니다

- **신선배아 이식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여 남성의 정자와 인위적으로 수정시킨 후 배양한 상태의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으로 이식하는 시술
- **동결배아 이식이란?** 최초 이식하고 남은 배아를 초저온 상태에서 동결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희망하는 배란 주기에 해동하여 이식할 수 있는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으로 이식하는 시술
-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상담실
 -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 *** 대면상담 :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 희망상담실 (영등포구소재, 심리상담에 한함)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1. 지원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 확인된 영유아

2. 지원내용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에 이르기까지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 일정관리, 건강정보 및 육아상식, 주요 국가정책 홍보 등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수첩을 제공합니다. 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 수첩에 수록된 임신주수별 산전관리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수첩내용은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 도모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담당진료 의사의 판단하에 개인별 산전관리 검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1.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2. 지원내용

-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양 플러스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기준 351만 3천원) 미만인 가구의 빈혈이 있거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신부

2. 지원내용

- 개인별 처방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등의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합니다.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인 경우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1.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는 경우 최대 50만원(쌍둥이인 경우 70만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를 통해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1. 지원대상

임신헌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에 최대 50만원(쌍둥이인 경우 7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드립니다.

- ※ '15. 5.1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15.4.30 이전 신청자는 고운맘카드로 사용
- ※ 카드수령후부터 분만에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및 발급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88-8700), 롯데카드(☎1899-4282)
- 제도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129)

자주 하는 질문

● 출산 후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공단 및 위탁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며, 분만 및 유산 후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1.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산모
-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에 최대 12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본부로 우편 송부(☎1566-0133)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자주 하는 질문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비용 지원

- 1. 지원대상**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1~6급 여성장애인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4조 제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2. 지원내용**
출산비용을 지급합니다.
- | 대상 | 지원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 아이 1인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유산·사산 포함) |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유산·사산 포함) |
| 1~6급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원(쌍둥이는 200만원, 만 4개월 이상 유산·사산 포함) |
- * 1~6급 여성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아이 1인당 160만원 지급(쌍둥이는 320만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요양비 (출산비) 지원

- 1. 지원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2. 지원내용**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1. 지원대상**
2008.1.1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2. 지원내용**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처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중,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있는 가정
* 4인기준 직장가입자 108,551원, 지역가입자 119,434원
- 2.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아이 1명 2주 10일, 쌍둥이 3주 15일,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산모 4주 24일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 지원대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고려하는 출산 후 7일(입양숙려기간)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

알려드립니다

● 입양숙려기간이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급합니다.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로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임신주수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
로써,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소득기준 :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4인기준 774만원)이하

2.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인당 최대 300만원까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 3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의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질병코드 또는 수술명)받고, 질환별 입원기간과 필수진료내역을 충족해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 중 및 분만직후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 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 코드 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O11, O14, O15
필수 진료 내역	•'자궁수축억제제 약물명' 및 '투여일수'	•'자궁색전술' 또는 '자궁 적출술' 또는 '5팩 이상 수혈'	•'황산마그네슘 투여여부' 또는 '항고혈압제 약물명'

02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직장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2. 지원내용

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40% 내에서 급여를 지급(50~100만원)하고 급여 중 일부(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 본인이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예시〉

●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씨

– 매월 80만원(200만원*4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20만원(80만원*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60만원입니다.

* 박엄마씨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휴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60만원 씩 1년 동안 총 720만원(60만원*12개월)을 받고,

–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240만원(20만원*12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신청(☎1350)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 포함)

1. 지원대상

출산 전·후(유산·사산 포함) 휴가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

2. 지원내용

출산 전·후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출산 : 출산 전·후로 최대 90일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유산·사산 : 임신기간에 따라 30일~90일까지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동안 최대 월 405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동안 최대 월 135만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1350)

자주 하는 질문

● 언제 누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이후 사업주가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지원대상

육아를 위해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2. 지원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신청(☎1350)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1. 지원대상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에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2. 지원내용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간 월 4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신청(☎1350)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금 (육아휴직 등 부여)

1. 지원대상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육아휴직 허용시 월 10만원(단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월 5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월 20만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허용시 월 20만원(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월 30만원)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신청(☎1350)

알려드립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

- (기존) 육아휴직 등 지원금의 50%는 복귀 1개월 후 지급, 나머지 50%는 6개월 계속 고용시 지급
- (개선)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1개월치 지급, 나머지(최대 11개월)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시 지급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지원대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신청(☎1350)

memo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 지원대상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2.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종류	지원한도	상세 지원내용
설치비	무상 지원	시설설치비 단독 3억원 공동 6억원 산단형 15억원 컨소시엄 6억원	- 시설전환비용의 60~8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장애아 시설 80%)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 지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시설전환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 지원
	교재교구비	5천만원	교재교구는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용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공동 9억원)	- 상황: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이율: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용자대상에서 제외
운영비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 60만원 (중소기업 월 120만원)	시설장은 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아동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지원	중소기업 월 120~520만원	19명 이하: 120만원 20명~39명 이하: 200만원 40명~59명 이하: 280만원 60명~79명 이하: 360만원 80명~99명 이하: 440만원 100인 이상: 520만원 (고용센터에 신청)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설치비: 근로복지공단 ☎052-704-7354,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2670-0411~9, 부산 ☎051-320-8181~6, 대전 ☎042-870-9110~6)
- 운영비: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3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2.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원~40만 6천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16.3월 이후 단계변경예정)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어린이집 (보육료)	40만6천원	35만7천원	29만5천원	22만원	22만원	22만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행복콜센터 ☎1566-0233)

자주 하는 질문

● 보육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

– 15일 이전 신청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서비스 지원, 익월 1일 부터 변경신청한 서비스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지원대상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3~5세 아동

2.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보육료 : 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원
- 방과후과정비 : 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원

〈유의사항〉

-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부모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복지포털을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
 - 취학유예의 경우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복지포털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에듀콜센터 ☎1544-0079)

가정양육 수당 지원

1. 지원대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전 만 0~5세 영유아

2. 지원내용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연령 (개월)	양육수당	연령 (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 (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만원	0~11	20만원	0~35	20만원
12~23	15만원	12~23	17만 7천원		
24~35	10만원	24~35	15만 6천원		
36이상~ 84개월 미만	10만원	36~47	12만 9천원	36이상~ 84개월 미만	10만원
		48이상~ 84개월 미만	1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복지포털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행복콜센터 ☎1566-0233)

자주 하는 질문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
- 15일 이전 신청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 지원
-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은 ?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월부터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1. 지원대상

부모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으로 어른 없이 아동이 혼자 있는 등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24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 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유형	소득 기준	시간제(시간당 6,500원)		영아종일제(월 130만원)	
		A형*	B형**	0~1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4인 기준 264만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이하 (4인 기준 374만원)	2,925원	3,575원	—	6,500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이하 (4인 기준 527만원)	1,625원	4,875원	—	6,500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6,500원	—	6,500원

*A형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홈페이지(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자주 하는 질문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1. 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2.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 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시간연장보육(19:30~24:00, 유아학비 대상아동도 지원가능), 야간보육(19:30~익일 07:30), 24시간보육(07:30~익일 07:30), 휴일보육(공휴일)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간제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아동

2. 지원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시간당 보육료 : 기본형 2,000원, 맞벌이형 : 1,000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시간제보육콜센터(☎1661-9361)에 신청·문의

육아종합 지원센터

1. 지원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2. 지원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도서·장난감 등의 대여, 체험 및 놀이공간 이용, 부모에 대한 육아상담(아이사랑 플레너) 및 교육(키움뜰 부모교육), 양육관련 프로그램 제공, 부모간 육아정보 교류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1. 지원대상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

2. 지원내용

- 안전한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 대여를 지원합니다.
- 부모,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상시프로그램을 운영(주 2회 이상)합니다.
※ 동화구연, 미술놀이, 요리활동, 아동놀이지도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알려드립니다

● 공동육아나눔터란?

-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에 따라 설치하여 아이를 키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눔으로써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녀는 또래를 만날 수 있으며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하고 대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입니다.

04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 지원대상

- 검사 : 전 신생아
- 환아관리 :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 아동

2.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6종*)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환아의 정밀검사비용을 지급하고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

2. 지원내용

청각선별검사비(AOAE 10,000원, AABR 27,000원)를 지급하고,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될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1. 지원대상**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2. 지원내용**
 - 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5백만원~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영양 플러스

-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기준 351만 3천원) 미만인 가구의
저체중, 영양섭취가 불량한 만 6세(72개월) 이하 영유아
- 2. 지원내용**
보충영양식품을 지급하고 부모에게 영양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4인기준 175만 6,574원) 이하
만 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2. 지원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정액 지원합니다.
※ 16년 지원단가 : 기저귀(월 6만 4천원), 조제분유(월 8만 6천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만 12세 이하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만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 2. 지원내용**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15종의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
합니다.

항목	국가예방접종 목록
1	BCG(파내용)
2	B형간염
3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4	IPV(폴리오)
5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6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7	수두
8	일본뇌염(생백신)
9	일본뇌염(사백신)
10	Td(파상풍/디프테리아)
11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12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3	PCV(폐렴구균)
14	A형간염
15	자궁경부암(16년 상반기)

- 3. 신청방법 및 문의**
전국 보건소 및 7천여 지정 의료기관 방문(보건복지콜센터 ☎129)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 기타 문의사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48~6852

영유아 건강검진

1.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건강검진(7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을 지급하고, 검진결과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진단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1차) 4-6 개월	(2차) 9-12 개월	(3차) 18-24 개월	(4차) 30-36 개월	(5차) 42-48 개월	(6차) 54-60 개월	(7차) 66-71 개월
건강 검진	○	○	○	○	○	○	○
구강 검진	-	-	○	-	○	○	-

*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안내문이 발송되면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입원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별도 신청 없이 지원(보건복지콜센터 ☎129)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 검진)

1. 지원대상

만 3~6세 아동

2. 지원내용

- 어린이집 아동 등에게 시력검진 및 눈 보건교육을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아동의 눈수술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취학전 아동 단체 불소 도포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2. 지원내용

어린이집, 유치원을 방문하여 아동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 치아에 불소제제를 덧어씹우고, 구강보건 교육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05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가정위탁 아동 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가정에 맡긴 경우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2. 지원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월 12만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3만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상해보험료	연 6만 5천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입양아동 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2. 지원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6세 미만 아동 월 15만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월 62만 7천원 (경증) 월 55만 1천원
	의료비 최대 연 260만원
의료급여	☞ 의료급여 제도 참고(141p)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06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 드립니다.

초등 돌봄교실

1. 지원대상

- 오후돌봄 (방과후~17:00)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1~2학년 학생
 - 3학년 이상은 전년도에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들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한 수용
- 저녁돌봄 (17:00~22:00)
 -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학생
 - ※ 3~4학년의 경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

2. 지원내용

- 오후돌봄 :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예체능활동,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및 간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저녁돌봄 : 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및 급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급·간식은 학부모 부담(단,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은 무료)
 - ※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휴식, 숙제, 독서 등 개인활동

3. 신청방법 및 문의

재학 중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원

1. 지원대상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맞벌이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

2.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5일, 1일 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로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3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중 4학년~중학 3학년 청소년

2. 지원내용

일일 4시간, 6일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방학중에도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 전문체험활동(주중 주 4시간, 주말 월1회 5시간)
- 학습지원활동(교과학습 주 4시간, 보충학습 주 5시간)
- 자기개발(2시간 이상), 특별지원(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지역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기타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02-330-2831~3)

07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고교학비 지원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2.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학년 초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신청(교육부 ☎1544-965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2. 지원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학년 초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신청(교육부 ☎1544-9654)

급식비 지원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2. 지원내용

자녀의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합니다.(무상급식 지역 제외)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학년 초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신청(교육부 ☎1544-9654)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2. 지원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을 지원합니다.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학년 초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신청(교육부 ☎1544-9654)

자주하는 질문

- **고교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저소득 수급자격 기준) 학생 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시도교육청별 항목별로 다르나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60%(4인기준 219만 5,717원~ 263만 4,860원) 이내
- **고교학비지원 신청기간 후에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후에는 학교장 추천제도를 이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19만 5,717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

2. 지원내용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16년)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200원	연회 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3,300원	1, 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31,300원	연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분기별 지급
	입학금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하는 질문

-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할 수도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08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장학금 지원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1.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유형 : 국내 대학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가장학금 II 유형 : II 유형에 참여한 학교의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 하되 저소득층 우선 지원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 '14년 이후 국내대학 입학자 중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단, '93.1.1. 이후 출생자에 한함)

2. 지원내용

- I 유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2015년 소득분위별 연간 지급금액〉 (단위 : 만원)

소득분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지원금액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 II 유형 :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기초~2분위는 연간 480만원 지원, '15년 기준임)
- ※ '16년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문의(☎1599-2000)

알려드립니다

● 소득분위란?

소득수준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해 신청학생 가구의 재산, 소득 등을 조사하여 10개의 구간(기초~10분위)으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근로장학금

1. 지원대상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으로 성적 C학점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2. 지원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시급단가 :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9,500원
- 최대 인정시간 : 주간 20시간, 야간·원격·방학중 4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
-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알려드립니다

- '15학년도부터 장학생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 소득분위를 변경*하였으며 우선순위 1순위 범위를 조정** 하였습니다.

* (기존) 7분위 → (변경) 8분위

** (기존) 1순위 ~ 소득 3분위 까지 → (조정) 1순위 ~ 소득 4분위 까지

드림장학금

1. 지원대상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우수학생

- I 유형, 국내장학생 : 졸업예정자인 고교 2, 3학년
- II 유형, 해외장학생 : 국내장학생(I 유형) 중 해외대학 진학자

2. 지원내용

- I 유형, 국내장학생 : 진학 준비에 소요되는 실비 경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II 유형, 해외장학생 : 연간 최대 5만달러(USD) 이내(학비, 체재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학비 : 대학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학교시설 이용료
 - 체재비 : 연간 최대 2만달러(USD)
 - 항공료 : 연간 최대 2,500달러(USD) 이내에서 매년 1회에 한해 왕복 항공료 실비 지원(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1. 지원대상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체능계열 학과(부) 3학년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장학생 선정 후 해당학기부터 2년간 지원합니다.
(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 지원금액 : 매학기별 대학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원 이내에서 지원(예산 범위 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4년제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우수학생 및 이공계열 학과(부) 3학년 진급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추천된 학생(매학기 일정 성적** 이상 충족 시 계속 지급)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100점 만점 중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이상/4.5만점(3.30이상/4.3만점)

2. 지원내용

학부과정 중 최대 4년(정규 8학기*)까지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을 지원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학기당 180만원의 생활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인문100년 장학금

1. 지원대상

인문학에 대한 학생의 학업의지와 대학의 인재육성계획을 반영하여 '전공탐색유형'과 '전공확립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 선발

• 전공탐색유형

- 선발대상 : 국내 고교 3학년 및 4년제 대학 1학년
- 선발방법 : 인문사회계열 분야에서의 성장가능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
- 석·박사 진학 연계 :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으로 우선 선발

• 전공확립유형

- 선발대상 : 국내 4년제 대학 3학년
- 선발방법 : 대학별 인재육성계획 평가 후 대학에 선발권 부여
- 석·박사 진학 연계 : 대학별로 BK21플러스/인문한국지원사업(내) 및 자체 지원계획과 연계

2. 지원내용

- 전공탐색유형 : 대학 1~4학년 등록금, 생활비(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학업장려비를 지원합니다.
- 전공확립유형 : 대학 3~4학년 등록금, 생활비(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학업장려비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알려드립니다

- '15학년도부터 국가우수장학금 인문사회계 장학금이 '인문100년장학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고교단계부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여 진학을 유도하고 학사부터 박사과정까지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이 재구성되었습니다.

09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학자금 대출 지원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출받고 취업한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든든학자금] 대출

1.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재취업을 희망하는 장년층(만35세~만45세)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와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를 위해 취업후상환학자금 시범 실시(전문대 계약 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2. 지원내용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원 한도(학기당 150만원)에서 대출이자 2.7%로 대출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3분위 이하의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무이자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1.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학부생 : 가구소득 9분위 이상 / 대학원생 : 소득분위에 관계 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 단, 학업을 지속하는 만 56세 이상 만 60세 미만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가능 (만 55세 이전 등록 및 재학 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 56세 이상 신입생 불가)
 -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2.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 소요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등록금 대출한도]
 -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 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서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평균성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학생

순위	지원대상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 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3순위	• 특별추천자

2. 지원내용

당해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10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급식 및 교육복지

급식, 정보화, 학습,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학교 우유급식

1. 지원대상

-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학생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 고등학생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가정

2. 지원내용

200ml 우유(1개당 430원 범위 내)를 학교급식으로 연간 250일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소속 학교 신청

아동 급식 지원

1.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 중 가정환경 상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지원내용

대상아동의 실정에 맞게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부식, 식품권 등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2. 지원내용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재학 중인 학교 및 교육청에 문의

memo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 지원대상

실종아동(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포함) 및 가족

2. 지원내용

- 실종·유괴예방을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지원합니다.
- 전단 제작 지원 등 실종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학대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용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 아동학대 의심 상황 : 신체·정서·성학대·방임 및 유기, 신체적·행동적 징후

2. 지원내용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심리치료 서비스	학대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교육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가족기능 강화사업 추진

3. 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112) 또는 스마트폰 앱(App) “아동학대” 설치 후 신청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전국56개소, <http://korea1391.org> 설치현황 참조)

학대피해아동 쉼터

1. 지원대상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학대재발 위험이 높아서 현재 생활 중인 가정의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 피해아동

2. 지원내용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을 지원합니다.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등을 지원합니다.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를 지원합니다.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아동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협조 요청

자주하는 질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 교사 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신학검임교사 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총 24개직군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학대피해의심아동과 학대 행위 의심자와 관련한 대략적인 정보(이름, 나이, 주소지, 연락처, 가족관계) 등을 말씀 해 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 신고자의 신원노출이 되지 않나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3항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세, 만 13세 가입 가능

2.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통장에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3만원 이내의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드립니다.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3만원까지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드림스타트

1.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2.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 환경·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 체험, 양육지원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12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위기상황에 처해있거나 방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주거, 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국립중앙 청소년 디딤센터) 운영

1. 지원대상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세~18세)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

2. 지원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4박5일)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031-333-1740, <http://www.nyhc.or.kr>)

※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국번없이 ☎1388), 교육청, 청소년쉼터, 학교, Wee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자주하는 질문

- 참가비용은 얼마나 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일반가정은 월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기과정(4박5일)에 참가하는 청소년은 참가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 지원대상

청소년(청소년기본법상 9~24세)

※ 우선지원대상: 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비행, 인터넷 중독, 폭력성·학교·가정피해, 학업중단 청소년 등

2. 지원내용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후 청소년의 문제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청소년전화(☎1388)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청소년 특별지원

1. 지원대상

다른 제도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만9세 이상~만18세 이하 위기 청소년(학업 중단,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생활지원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 이내)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월 10만원 이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청소년상담전화(☎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 지원대상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 신청연령: 만 9세 ~ 24세의 청소년

2. 지원내용

상담에서 멘토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상담지원	심리·진로상담 / 학습동기 강화상담 / 가족상담 등
교육지원	복학, 상급학교, 대안학교 진학 지원 / 검정고시 지원 /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지원
취업지원	직업체험 / 진로교육 / 경제활동체험 / 취업연계 지원 등
자립지원	생활 지원 / 건강·정서 지원 / 법률교육 / 자격취득 / 자기개발 지원 등
건강증진	건강검진 / 건강생활실천관리 지원 / 체력관리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재능 개발 / 자원봉사 활동 / 지역사회 참여활동 / 지역 특화체험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교과서학습 지원 / 특기적성 지도 / 진로상담 / 심리·정서 지도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문제 상담

3. 신청방법 및 문의

- 청소년상담전화(☎1388)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kdream.or.kr) 신청

청소년 성문화센터

1.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2. 지원내용

- 대상별, 연령별 전문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 유치원,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1.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청소년

2. 지원내용

-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에서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등 숙박교육 후 1년간 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 재유입 예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 기본과정으로 청소년 성장캠프 40시간 및 심화과정으로 희망키움 과정 20시간 교육과정 지원
 - 성장 캠프 전·후에도 심리적지지,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전·사후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긴급전화 ☎1366)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

2. 지원내용

-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를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치유 등을 지원합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및 치유특화프로그램 운영(인터넷치유 캠프, 가족치유캠프 등)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일반청소년 최대 3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60만 1,925원) 이하 취약계층 최대 50만원)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청소년전화(☎1388) 또는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

WEE 클래스 상담지원

1. 지원대상

학생 및 학부모

2. 지원내용

학교폭력, 교우관계 등 개인, 가정, 사회 요인에 의한 학교적응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상담 등을 통해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합니다.

구분	내용
Wee클래스 (학교)	잠재적 위기학생에 대한 개인상담/집단상담/교육프로그램/심리검사/자문 수행
Wee센터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학생 및 상담희망 학생에 대해 진단·상담·치유연계서비스, 심층심리검사, 정서행동특성검사 후속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서비스 제공
Wee스쿨 (시·도 교육청)	장기위탁교육,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치유 및 교육, 교과활동, 직업진로 교육, 방과후 활동, 상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가정형 Wee센터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주거)·상담·교육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

- Wee홈페이지(www.wee.go.kr)
- 위프로젝트 특임센터(☎02-2057-8701~7)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1. 지원대상

9~24세 위기 청소년 및 가족

2. 지원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지원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 Net)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일정 기간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청소년전화(☎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청소년전화 1388

1. 지원대상

청소년(만 9~24세), 부모 및 가족

2. 지원내용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상담부터 가족갈등, 교우관계 문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진로 및 학업 문제 등을 경험하는 청소년 및 가족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전화상담 : ☎1388 또는 지역번호+1388로 전화
- 문자상담 : #1388번으로 문자상담
- 카카오톡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388과 친구맺기 후 상담 실시
- 사이버(인터넷 채팅) 상담 : www.cyber1388.kr에 접속해서 채팅방 참여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 지원대상

부모 이혼 등의 가족해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비행·범죄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출하여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2. 지원내용

의·식·주 등 생활보호에서부터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개별 가출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청소년전화(☎1388), 1388 홈페이지(www.cyber1388.kr)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쉼터에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 7일 이내부터 최장 3년 까지(필요 시에는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머물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입소 기간	24시간 ~ 7일 이내	3개월 이내 ※ 3개월씩 2회 연장가능 (최장 9월)	3년 이내 ※자립지원관이 없는 시도의 경우 필요시 1년 단위 지속 연장가능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사업

1. 지원대상

'09.3.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 초등학교 도서관)

*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16, '17년 진단계획)

2. 지원내용

• 환경보건법 적용 유예시설을 대상으로 중금속, 기생충알 등 환경 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진단을 무상 지원합니다.

* '16~'17년 27천개소 진단예정

항목	평가 기준
① 시설물의 부식 및 노후화	• 활동공간내 모든 시설물에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② 도로나 마감재 중금속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 • 납이 질량분율로 0.06% 이하
③ 실내공간의 오염물질방출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μ g/m ³ 이하 • 폼알데하이드 100 μ g/m ³ 이하
④ 목재의 방부제	• 사용이 금지된 목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⑤ 토양 중금속	• 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⑥ 기생충(란)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⑦ 합성고무바닥재 중금속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
⑧ 합성고무바닥재 폼알데하이드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이 75mg/kg 이하

3. 신청방법 및 문의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콜센터(☎1899-1021)
- 어린이활동공간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

13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류,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1. 지원대상

만 15~24세 대한민국 청소년

2. 지원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국가간 청소년 교류	• 교류규모 : 총 600여명(초청 300여명, 파견 300여명) • 교류시기 : 4~11월, 평균 10일 • 파견국 : 매년 약 20여개국 • 참가대상 : 만 16~24세 청소년 • 경비부담 : 항공료는 파견국, 체재비는 초청국 부담 ※ 자부담 : 왕복항공료의 80% • 주요내용 :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방문, 문화체험, 가정방문
한중 청소년 교류	• 교류규모 : 총 1,000명(초청 500명, 파견 500명) • 파견국 : 중국 • 참가대상 : 만 16~24세 청소년 • 경비부담 : 초청국에서 체재비, 항공료 전액 부담 ※ 자부담 : 참가비 30만원 • 주요내용 :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방문, 문화체험, 가정방문 등
청소년 해외자원 봉사단	• 파견규모 : 총 300여명 • 파견시기 : 7~10월, 10일 이내 • 파견국 : 말레이시아, 몽골 등 8개국 • 참가대상 : 15세~20세 • 경비부담 : 편도 항공료 및 현지 봉사 활동비 일부 지원 ※ 자부담 : 참가비 65만원 이하 • 주요내용 : 교육봉사, 노력봉사, 청소년교류, 문화체험 등
국제회의 행사 참가단	• 파견규모 : 총 25명 • 파견시기 : 8월~10월, 7~20일 이내 • 파견국 : 일본, 이스라엘 등 4개국 회의 참여 • 참가대상 : 만 16세~24세 • 경비부담 : 왕복 항공료의 70% 지원 ※ 자부담 : 항공료의 30% 및 기타 체재비 및 활동비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http://iye.youth.go.kr>)신청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55)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02-330-2895)
※ 공개모집(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자주하는 질문

- 국제교류에 참여하고 싶어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참가자 선발기준은 공통적으로 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참가활동 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지원동기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특기, 단체활동 참여의 적극성 등을 고려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참가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등의 소외계층 청소년을 전체 인원의 20% 이상 선발하고 있으며 성별이나 학교, 지역 등을 안배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1. 지원대상

대한민국 청소년 및 법인·시설·단체

2. 지원내용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문의

지자체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	청소년담당관	☎02-2133-4130
부산	아동청소년담당관	☎051-888-1624
대구	교육청소년정책관	☎053-803-4045
인천	아동청소년과	☎032-440-2855
광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062-613-2294
대전	여성가족청소년과	☎042-270-4684
울산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791
경기	아동청소년과	☎031-8008-2554
강원	여성청소년가족과	☎033-249-2859
충북	여성정책관	☎043-220-3953
충남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92
전북	여성청소년과	☎063-280-4346
전남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72
경북	여성가족정책관	☎053-950-2546
경남	여성가족정책관	☎055-211-6856
제주	복지청소년과	☎064-710-2843
세종	여성가족과	☎044-300-3723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53)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기획부(☎02-330-2847)

지역청소년 활동정책 진흥사업

1. 지원대상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청소년활동진흥)

2. 지원내용

사업과제	주요 내용
①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 지역 내 청소년활동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청소년시설·단체 등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
② 청소년활동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	• 청소년지도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교육 실시
④ 지역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운영, 보도자료 배포, 소식지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등
⑤ 지역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청소년활동 정보통신원(청소년·유관 기관 지도자, 대학생) 및 기자단(중·고등학생) 운영 및 청소년종합정보사이트(www.youth.go.kr)를 통한 정보 제공
⑥ 청소년활동 신고 지원	• 청소년활동 신고지원반 운영, 숙박형 등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 안내 및 컨설팅, 신고 수리된 활동 정보에 관한 안내, 청소년활동 불편신고 응대 및 프로그램 실시정보 안내
⑦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 청소년분야 및 관련분야(청소년수련시설,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학교, 언론 기관 등)의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⑧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 터전 관리, 전문인력 pool 확보 및 교육 실시, 청소년자원봉사정보시스템(dovol, youth.go.kr) 운영 등
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지원	• 지역별 인증 수련활동 활성화 컨설팅, 교육·설명회 운영, 인증신청 접수 및 심사지원, 실사 및 사후관리 등
⑩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지원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광역 사무국으로서 해당 지역의 국제성취포상제 운영과 관련된 제반 지원업무 수행 및 청소년·기관의 참여 활성화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시·도	소재지	문의처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02-849-0404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051-852-3461~2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053-659-6210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032-833-8057~9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062-234-0755~6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042-488-0732~3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052-227-0606~7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031-232-9383~5
강원	강원도 원주시(분소 : 강릉시)	☎033-731-3704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043-220-6821~2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041-562-9003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063-232-0479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061-280-9060~7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054-850-1004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055-711-138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64-751-5041~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044-864-7935

알려드립니다

◎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이란?

– 17개 시·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지역 청소년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중앙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국내로 이주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북한이탈, 중도입국청소년 등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맞춤형 정보서비스	•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 정착, 교육, 취업 진로, 생활 전반의 정보 안내 • Rainbow School 등 활동프로그램 및 기관연계 지원 • 진로·진학지도, 심리·정서상담 연계 지원
입국초기 지원교육 Rainbow School	• 2015년 서울·경기 및 12개 지역, 17개 기관에서 위탁운영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및 특기적성, 사회문화, 심리프로그램 지원 • 전일제, 겨울학교, 여름학교,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 ※ 위탁운영 기관마다 프로그램 운영의 차이가 있음
진로지원 프로그램 무지개 Job아라!	• 2015년 전국 4개 기관 운영 • 진로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및 설계, 진로캠프 실시 • 10대 후반~20대 초반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통합상담 및 가족연계 프로그램	• 온·오프라인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실시 • 맞춤형 상담 및 통번역 상담 실시 • 이주배경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마음돋보기" 실시 • 이주배경청소년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 내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가족캠프 "다독임캠프" 실시
역량강화 프로그램	•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지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4개 지역(직영 1개, 컨소시엄 3개 기관)에서 멘토링 실시 • 이주배경청소년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마음으로 통하는 "통·통·통" 통합캠프 실시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젝트 다독다독 (多talk茶talk)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심리·정서지원 및 치료비지원 사업 • 심리치료비 1인 110만원 지원 ※ 심리치료비는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02-722-2585, www.rainbowyouth.or.kr)

memo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01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건강보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여 가정경제를 보호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제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급여 제공
요양비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자, 제1형 당뇨병환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건강검진제도 참조(148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쌍둥이는 70만원) ☞ 임신·출산 진료비 참조(79p)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1577-1000)

02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가 과도하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19만 5,717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드립니다.

대상	지원내용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1. 지원대상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2. 지원내용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의료비를 전부 부담했던 필수 검사·수술·약제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료비의 5%(암, 심장병, 뇌질환), 또는 10%(희귀난치성질환)만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예시>

- ▶ 대장암 환자 김모씨는 치료제인 '아바스틴'이 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의료비가 1천 6백 25만원에서 98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 ▶ 희귀난치성질환자 박모씨는 치료제인 '아피니토'가 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의료비가 2천 2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구분	'14년	'15년	'16년
약제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행위	MRI 등 영상검사	방사선 치료 수술행위	검사(유전자 검사 등), 교육 상담료 등
치료 재료	—	심장·뇌수술 등 첨단 수술재료	일반 수술재료

3. 신청방법 및 문의

별도 신청 없이 지원(보건복지콜센터 ☎129)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1.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매월 1회 지원합니다.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고혈압, 당뇨병 지속치료를 향상을 위해 병원 진료일 및 예약일에 맞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육 서비스 :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참여를 희망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등록·관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 후 참여 가능
-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043-719-7387)

자주 하는 질문

● 어느 병원·약국에서 가능한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관할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방문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 병원을 처음 방문하실 때 사업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

1. 지원대상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암, 심장병, 뇌질환, 화상)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2. 지원내용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중증질환의 경우 5%로,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10%로 낮추어 의료비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구분	암	심장병	뇌질환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 기간	5년	30일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이식 시 60일)	30일	1년	5년 (결핵 2년)

3. 신청방법 및 문의

-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1577-1000)
- 심장병, 뇌질환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1. 지원대상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질환으로 인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저소득 계층(차상위포함)
- (본인부담금 100만원이 넘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200만원이 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51만원)이하인 저소득 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120%(4인 기준 351~527만원)인 본인 부담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30% 이상인 가구 중 심의를 통해 지원

2. 지원내용

최대 2천만원까지 본인부담 의료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1577-1000)

03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제도

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대 상 자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급여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천원~2천원 (2종)입원 10%, 외래 1천원~15%
요양비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자, 당뇨병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건강검진제도 참조(48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원을 가산계좌로 지급(쌍둥이는 70만원) ☞ 임신·출산 진료비 참조(79p)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금액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 신청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금 보상제

1.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

* 매 30일간 1종은 2만원, 2종은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지원내용

초과금액의 50%를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노인틀니 제외)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129)

본인부담금 상한제

1.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적용한 후에도 본인부담금이 일정수준*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

* 1종은 매 30일간 5만원, 2종은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적용 후 초과되는 금액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노인틀니 제외)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129)

본인부담 면제

1. 지원대상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 부담금	- 당연 적용 (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등 록중증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시) - 신청에 의한 적용 20세 이하 재학자, 임신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 심장질환자(수술을 포함한 입원 기간 최대 30일)

※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 본인부담금은 본래 면제임

2. 지원내용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 해당되는 면제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기간(적용기간)이 긴것으로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129)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 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2. 지원내용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매월 6천원(72,000원/연)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의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인 있는 수급자(장기입원자)는
해당 기간 분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
(☎1577-1000)

memo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보건소 문의 후 신청(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보건복지콜센터 문의(☎129)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2. 지원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천만원, 기타 암종 연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문의 후 신청(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152종)이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 가구*(산정특례 등록 후에 신청 가능)

- * 환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가구 기준 527만원) 미만, 최고재산액 300%(4인가구 대도시기준 2억 8,837만원) 미만
-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4인가구 기준 878만원) 미만, 최고재산액 500%(4인가구 대도시기준 4억 8,062만원) 미만

2. 지원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근육병 등 질환자에게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게 특수식이 구입비(만 18세 이상, 7개 대상질환) 등을 지원합니다.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입원·격리치료 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 보호비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4인가구 기준 527만원)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

2. 지원내용

201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지원합니다.

〈2016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 입원명령이란?

– 난치성 결핵인 다제내성결핵 환자나 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결핵 환자들을 입원시켜 결핵 치료를 돕고, 관련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5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건강검진 제도

1.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세부내용
일반 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만 40세·66세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
국가 암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기준에 적합한 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일반검진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 도달자, 학생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만 15~18세 비취학 청소년
영유아 건강 검진	만 0~5세 영유아

2. 지원내용

구분	지원세부내용
일반 건강검진	- 심장·뇌혈관질환을 중심으로 1개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2차로 검진 ※ 검진주기 : 2년 1회(비사무직은 1년 1회)
국가 암검진사업	- 위암검진 : 40세 이상의 남·여(2년 1회) - 간암검진 :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검진 : 50세 이상의 남·여 - 유방암검진 :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검진 :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구분	지원세부내용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평가 및 개선처방, 성·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 - 만 40세 : 고지혈증, 복부비만 검사 - 만 66세 : 노인신체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치매, 골다공증 - 비취학 청소년 :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B형 간염검사 등
영유아 건강검진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1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 총 7회(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3.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 취학하지 않은 청소년은 보건소에서 발송한 안내서 및 건강진단 대상자 확인서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보건복지콜 센터 ☎129)

06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예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립니다.

정신건강 증진센터 이용

1. 지원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경증 질환자 및 일반 지역주민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2. 지원내용

-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 관리, 상담,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증 질환자 및 일반 지역주민 대상 심층사정평가, 상담, 프로그램 등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청소년에게는 심층사정평가, 상담, 프로그램 등 1:1 맞춤형 서비스 및 정신과 치료비 지원, 바우처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문의(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 지원대상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지역주민

2. 지원내용

각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합니다.

- 흡연예방 및 흡연자 금연 촉진
- 음주폐해 예방관리
-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및 비만 관리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 구강건강 증진 및 구강병 예방 진료
-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환자 지원
-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 치매검진 및 사례관리
- 가정방문 건강관리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재가암 관리

1. 지원대상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저소득층 암환자(치료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

2. 지원내용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상담, 통증관리, 투약지도, 간호서비스 제공 및 치료약품과 기타 소모품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 지원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지원내용

-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를 통한 고위험군을 발굴 후 심층 사정평가 수행, 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독폐해 관련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1. 지원대상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2. 지원내용

- 중독자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대상자 증상, 동기수준에 맞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등 지역사회내 중독관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07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 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1등급~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 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특별 현금 급여	장기요양 인프리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신청(☎1577-1000)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 경감

1.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19만 5,717원)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를 경감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별도 신청 없이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령층 지원서비스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원이 필요할 때
-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 치매가 걱정될 때
-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01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드려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제도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

2. 지원내용

매월 최대 202,600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202,6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324,160원

※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은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하여 받게 됩니다.

※ '16.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금액 인상 예정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이 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알려 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를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과거에 탈락이 되셨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 서비스

1.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 국민)과 수급권자 등

2. 지원내용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하여 건강, 재무, 대인관계, 여가 등에 대한 상담, 연계, 사후관리,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노후긴급 자금 대부

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지원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의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75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주택연금 제도

1. 지원대상

주택을 소유(합산가격 9억 이하)하고 있으나 다른 소득마련 방안이 없어 노후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 어르신

2. 지원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하여 드립니다.

※ 집값이 3억원인 경우 60세 가입자는 매월 682,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86,000원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중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5.12월 가입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인출하여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홈페이지(www.hf.go.kr)

알려드립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하여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은퇴금융 아카데미

1. 지원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금융상품 및 재무설계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

2. 지원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은퇴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에 관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홈페이지(www.hf.go.kr)

memo

02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 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1. 지원대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재능나눔활동 : 만 65세 이상
- 취업창업활동 : 만 60세 이상(소득기준 없음)

2. 지원내용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및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 공익활동 : 월 2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30시간 이상)
* 노노케어, 취약계층 돌봄, 경륜전수활동 등
- 재능나눔활동 : 월 1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창업활동 : 노인일자리 취업창업사업단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노인일자리 생산물(반찬, 서툰곡 등) 제조·판매, 아파트 택배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수당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활동수당은 기초연금대상자 선정시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03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어르신들에게 활동 및 여가·문화·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1. 지원대상

일반 노인

2. 지원내용

동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향유를 돕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음껏 참여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별도 신청 없이 이용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 지원대상

우울증상이 있는 등 사회관계 활성화가 필요한 독거노인

2. 지원내용

봉사, 취미활동, 운동, 일거리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신청(☎1661-2129)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1. 지원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2. 지원내용

문화학교(악기,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 문화나눔봉사단, 문화동아리 등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문화원, 문화의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제출(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02-704-4332)

*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내 주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층 정보화 교육

1. 지원대상

55세 이상

2. 지원내용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등의 과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의 후 신청(☎064-909-3015)
- 정보화교육기관 안내(국민정보화 교육 www.itstudy.or.kr)

온라인 정보화 교육

1. 지원대상

전국민

2. 지원내용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스마트폰 활용, IT 자격증 과정 등 80개의 수준별 온라인 정보화교육 과정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정보화교육(☎064-909-3021)

※ 연중 신청 가능

memo

04

치매가 걱정될 때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치매검진 지원

1. 지원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516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2. 지원내용

- 보건소(전국 254개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국 230여 개소 협약 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진단·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 이정신상태검사(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8만원)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 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 병원 11만원)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또는 치매지원센터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4인기준 516만원) 이하인 어르신

2. 지원내용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memo

05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어르신들의 안전한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하고 치아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노인실명 예방

1. 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만 4,860원) 이하인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우선)

2. 지원내용

- 노인 안검진 : 정밀안검사(1차), 안압·굴절검사(2차) 등을 지원 합니다.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지원
-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 백내장 등 안질환 약 24만원, 망막질환 약 105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노인틀니 지원

1. 지원대상

- 완전틀니 : 만 70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70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 ※ 2016. 7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 지원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클래스프(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적용하여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노인임플란트 지원

1. 지원대상

만 70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 2016. 7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려드립니다

- 부분 무치악이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지원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하여 해당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평생 2개)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2. 지원내용

거주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폐렴
구균 무료접종, 보건소 및 15,000여개 참여 의료기관에서 인
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전국 보건소 및 15,000여 지정 의료기관(인플루엔자에 한함)
방문(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자주 하는 질문

●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간에는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
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memo

06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서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4인기준 774
만원) 이하인 어르신

※ 단기가사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
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2. 지원내용

유형	세부 지원내용
방문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주간보호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단기 가사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2. 지원내용

건강상태 및 정기적인 안전확인, 운동·영양관리,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 1회 직접방문 및 2~3회 전화확인, 월 2회 생활교육 실시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독거노인 중 치매환자 또는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2. 지원내용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안전확인, 가정 내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도와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 센터 ☎129)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1. 지원대상

학대피해를 당한 노인

2. 지원내용

- 노인 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전화·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대피해 노인 상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쉼터를 운영합니다.
-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노인 학대 상담을 통해 지원(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129)

memo

07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교통비에서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감면으로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교통비	65세 이상 노인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시 신분증 제시(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노인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그 밖에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 보험료	지역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 재산 6천만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 재산 9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경감 –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1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각종 공공 요금	노인 복지 시설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memo

장애인 지원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



01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을 드려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 장애 1, 2급 및 3급 중복지장애

** '16년 기준,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2. 지원내용

- 기초급여 : 월 최대 20만 2,600원을 지급합니다.(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 부가급여 : 연령과 소득에 따라 2만원~28만 2,6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15년 기준)

구 분	만 65세 미만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8만원	28만 2,600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	2만원	4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액 차감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차감분('15년 기준, 기초연금 202,600원)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장애인연금은 미차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하여 지급되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을 별도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음.

장애수당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만 18세 이상의 경증(3~6급) 장애인

2. 지원내용

1인당 월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만원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아동 수당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1~6급)

2. 지원내용

구 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원	월 10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월 10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7만원	월 2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02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현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 지원대상**
출산한 1~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만 4개월 이상 유산·사산 포함)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2. 지원내용**
아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지원목적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1. 지원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 2. 지원내용**
중증 및 경증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
(중증 62만 7천원, 경증 55만 1천원)을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2세 미취학 장애아동
- 2. 지원내용**
어린이집 보육료(종일반 40만 6천원)를 지급합니다.
(종일반, 방과후,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1. 지원대상**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 2. 지원내용**
방과후에 하루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월 20만 3천원)를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아동 양육수당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
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지원내용

- 0~36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 36~84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1. 지원대상

장애아 무상보육료(취학전) 지원을 받는 만 0~12세 장애아동

2.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7:30~19:30)을 경과*
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지원단가 3,800원,
지원한도액 매월 22만 8천원)

* 시간연장보육(19:30~24:00,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야간보육
(19:30~익일07:30), 24시간보육(07:30~익일07:30), 휴일보육(공휴일)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4인 기준 516만원)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미만 1~3급 중증 장애아동

2. 지원내용

장애아동돌보미가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아동 1인당 연 480시간, 1회 2시간 이상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memo

03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장애인이 보다 자유롭게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 지원대상

장애등급이 1~3급인 대학생

※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 장애등급이 4~6급인 대학생도 가능

2. 지원내용

장애대학생의 대학 내 이동 및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학습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대학에서 도우미를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15학년도 2,750명 활동)

3. 신청방법 및 문의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문의 후 신청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http://doumi.kcce.or.kr>)

교육부(☎044-203-6954)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지원내용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도청 장애인담당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내용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신청방법 및 문의

소속 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교육부 ☎044-203-6562)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1.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2. 지원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을 지원합니다.(중증장애학생 우선 지원)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 학부모의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위한 종일반 운영을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와 종일반 중복지원 불가)

3. 신청방법 및 문의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교육부 ☎044-203-6560)

장애인 정보화교육

1. 지원대상 모든 장애인

2. 지원내용

- 방문 정보화교육 : 방문 정보화강사가 교육신청자 가정에 방문하여 1:1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육생 1인당 연간 60시간 이내 교육지원, 교재 및 교육비 전액 무료)
- 집합 정보화교육 : 전국 148개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등 정보화교육을 지원합니다.(교재 및 교육비 전액 무료)
※ 집합 정보화교육(3~12월), 방문 정보화교육(연중)

3. 신청방법 및 문의

- 방문 정보화교육 : 온라인(www.itstudy.or.kr) 또는 전화 신청(연중)
- 집합 정보화교육 :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기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도우미 상담실(☎1588-2670)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IT 긴급서비스(연중)
 - 지원대상 : 모든 장애인
 - 지원내용 : 컴퓨터 수리·SW설치, 정보통신기기 활용법, 정보화교육 수혜방법 및 정보화서비스, 전자민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화상담 및 방문서비스(무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도우미 상담실(☎1588-2670)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2. 지원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장애이해사이트	edu.knise.kr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
이압	blind.knise.kr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EBS 방송 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memo

04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지원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1. 지원대상

- 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서울맞춤훈련센터 및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에서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실시기관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2.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훈련준비금, 훈련참여수당,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훈련준비금	6일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 4만원 지급 (입학시 1회 한하여 지급)
훈련참여수당	1개월 및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제외)에게 월 5만원 지급
가계보조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월 7만원 지급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을 받는 사람 중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있는 경우 3명까지 1명당 3만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원 지급
식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에 의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원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운영부
(☎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직종은 표준훈련시간 700시간(약 6개월), 1,400시간(약 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훈련직종의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개인의 훈련진행 정도 및 훈련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라 훈련시간은 가감될 수 있으며, 전체 훈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하여 훈련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훈련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훈련생이 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훈련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직업 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훈련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을 받고 수료한 후 다시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 양성과정(훈련기간 1개월 이상이고 표준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을 수료하거나 중도탈락한 훈련생의 경우, 수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훈련받았던 동일훈련직종으로의 재입학은 수료 후 3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해 주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매월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직업능력개발원 입학시 기숙사 생활은 의무로 해야 하나요?**
 - 기숙사 생활이 의무는 아니며 본인이 통학을 희망하는 경우 통학도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1. 지원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원 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지원내용

- 훈련기간(3~7주) 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훈련준비금 4만원 및 훈련수당 1일 1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재해 보험가입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1588-1519)

memo

05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 일자리 지원

장애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기관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하는 전 일제 일자리 지원	일 8시간, 주 5일	126만 1천원
복지일자리		도서관, 우체국, 학교, 복지관 등에서 공공형 (사서보조, 우편물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일자리 지원	주 14시간, 월 56시간	33만 8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자리 지원	일 5시간, 주 25시간	103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노인요양보호사가 수행 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지원	일 5시간, 주 25시간	79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2. 지원내용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비용을 융자해 드립니다.
※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에서 4% 지원, 융자금 5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 동안 고용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 통근용 승합자동차,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당 3억원 한도,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중증 장애인 1천 5백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부담금리는?**
- 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담보종류(부동산, 보증서, 신용)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금리에서 4%를 차감한 금리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통근용 승합자동차 지원조건은?**
- 장애인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4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2년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해야하고 5년간 차량을 용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직업능력 개발지원 훈련수당

1. 지원대상

15세 이상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

2. 지원내용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중증 및 여성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이 훈련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거주지 인근의 훈련기관을 이용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유형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훈련기관 훈련 및 공단에서 승인하는 개별적 훈련이 있습니다.
※ 민간위탁훈련기관 훈련생은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하여 월 16만원~월 27만원 훈련수당 지원, 개별적 훈련을 승인받은 훈련생은 100만원 한도로 실제 훈련에 소요되는 훈련수강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 **학원비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 공단은 구직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훈련과정 (국가기술 자격 및 면허 취득과정, 공무원 시험준비과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훈련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100만원 한도로 실제 소요되는 훈련수강료의 전액을 지원(전체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음)합니다.
개별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지역 지사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2.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10억
원 한도)
※ (지원요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지원에 따른 신규고용
인원을 7년간 유지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이상
고용할 것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06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이 취업과 창업,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19만 5,717원) 이상
100%(4인 기준 439만 1,434원)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자립자금을 연 3%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구분	대출한도 (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천 2백만원 이내	(무보증대출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보증대출	2천만원 이내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 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원 이상	
담보대출	5천만원 이내	-	

※ 대여목적

- ① 생업자금
 - ②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⑥ 자기개발훈련비
 -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⑧ 기타 지체장애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용자 불가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근로지원인 지원

1.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지원내용

직장에서 장애인이 하는 일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일을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주 40시간, 1일 8시간 (월 약 172시간) 한도로 지원합니다.

※ 지원받는 시간당 3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후 신청(☎1588-151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1. 지원대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실시기관	훈련수당
직업적응 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환경적응 및 직업능력향상 훈련 실시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월 7만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과 연계가 가능한 기술 훈련 실시 (안마수련, 바리스타, 정보처리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	월 20만원 (훈련준비금 4만원, 1회)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731) 및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문의 후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2.7%(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임무고용을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 근속년수에 따라 월 15~60만원 지원

〈고용장려금 지급 단계〉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 최경증 6급(국가유공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 한국장애인공단 지사 방문, 우편, 전자신청(www.esingo.or.kr)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www.kead.or.kr)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작업지도를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2.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작업지도원이 지도한 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1/2)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후 신청
(☎1588-1519, www.kead.or.kr)

보조공학 기기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2. 지원내용

보조공학기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장애인 1인당 최대 300만원(중증 500만원)까지 무상 지원
- 장애인 1인당 최대 1,000만원(중증 1,500만원)까지 고용조건부로 지원
-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1588-1519)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의 80%(단, 생계급여수급자는 90%)를 지원합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 독서확대기와 같이 장애로 인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센터, 온라인(www.at4u.or.kr)을 통해 신청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도우미 상담실(☎1588-2670)

알려드립니다

● 보급절차



07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로 인한 진료·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장애인 의료비

1. 지원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비급여 항목은 제외)

- 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 외래 : 1차 의료기관 750원, 2·3차 의료기관 전액
- ※ 식대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3. 신청방법 및 문의

의료기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의료급여증, 장애 인정증 등) 제출(보건복지콜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19만 5,717원) 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 질환자 등

●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신청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지원내용	상세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 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 1~2급 : 30% 감면 -장애등급 3~4급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 : 1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등록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후 신청(☎1577-1000)

장애인 보장구 급여

1. 지원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구입비용의 90% 지급(품목별 기준액 범위 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전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구입비용 전액 지급(품목별 기준액 범위 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후 신청(☎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 시·군·구청 장애인담당부서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일부지급(최대 10만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초과 검사비용 일부지급(최대 10만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일부지급(최대 1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검사비 신청서 1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1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인등록진단비 및 검사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시각·청각 장애인

2. 지원내용

1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합니다.

구분	세부 지원내용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보행용 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5종),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3.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인보조기구센터(☎1670-5529)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인 만 18세 미만 입양 장애아동

2. 지원내용

연간 최대 260만원한도 내에서 본인이 낸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1. 지원대상**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
- 2. 지원내용**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발달장애 서비스

-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4인기준 774만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2. 지원내용**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하여 이용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 **반드시 장애등록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장애등록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하여야 함)

언어발달 지원

- 1. 지원대상**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이며,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4인기준 619만원) 이하인 가구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2. 지원내용**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등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청능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지원

-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4인기준 774만원) 이하 가구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자녀의 부모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지원내용**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월 16만원의 개인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을 6개월간 제공 (회당 50분, 월 4회 이상의 개별상담 가능)
* 최초 6개월 종료전 이용자가 이용 연장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 연장제공 가능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이용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을 지원합니다.

※ 전국 17개소 운영(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도, 시군구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하여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 지원대상

1~3급 중증장애인, 고령,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재활보조기구 대여·교육, 자기관리교육, 장애가족 지지 프로그램 제공, 재활스포츠 등 사회참여 지원, 방문, 한방 등 다른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국 142개 보건소에서 이용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08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1. 지원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64세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2. 지원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추가급여
1등급	106만 3천원 (약 118시간)	독거, 취업, 취학여부, 출산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9만 1천원~246만 4천원 추가 지급
2등급	85만 2천원 (약 94시간)	
3등급	64만 2천원 (약 71시간)	
4등급	43만원 (약 47시간)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문의 후 신청(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 한번 신청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 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1.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2.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를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 1. 지원대상**
무주택 세대주인 등록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도 포함)
- 2.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우선공급하여 1층에 우선배정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LH공사 문의 후 신청(LH공사 ☎1600-1004)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 1. 지원대상**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2.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 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가구당 최대 380만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 2. 지원내용**
장애유형별(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상담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 생활 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1. 지원대상**
실비입소 이용시설로 지정(전국 22개소)된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저소득 장애인
- 2. 지원내용**
입소비 중 매월 286,000원을 시군구에서 시설로 직접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인 거주시설 및 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

- 1. 지원대상**
 -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4인기준 774만원)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 2. 지원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후견심판절차비용 실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지정된 공공후견 교육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을 월 10만원 지급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무료 법률 구조제도

-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2. 지원내용**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면제, 법률상담, 형사사건 변호, 소송서류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또는 전화로 문의(☎132)

방송소의 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사업 (시·청각 장애인용 TV)

- 1. 지원대상**
시·청각 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지원)
- 2. 지원내용**
장애인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TV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에 문의 후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http://tv.kcmf.or.kr>) 신청

알려드립니다

- 시·청각 장애인용 TV란 ?
 - 장애인 방송(자막·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자막의 크기·위치·색상을 쉽게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을 갖고 있는 TV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1.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2. 지원내용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합니다.

-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차량등록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 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2. 지원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여,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운전 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1. 지원대상

- 1~4급의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의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2.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합니다.
 -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장애특성 및 변화된 신체조건에 맞는 운전적응교육을 실시합니다.
-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 상담 후 신청

자주 하는 질문

- 운전면허는 있는데 장애를 입은 경우 운전교육이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CPAD검사 후 합격 유/무에 따라 운전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은 지체·뇌병변·청각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5~6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면 운전교육이 가능합니다.
-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1종보통과 2종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9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지원대상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2. 지원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세무서 문의(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중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1. 지원대상

1~3급(시각 4급은 지역에 따라 상이)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2. 지원내용

취득세(중전 등록세 포함)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행정자치부 콜센터 ☎02-2100-3399)

상속세 상속공제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장애인이 75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연도에 500만원을 공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세무서 문의(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세무서 문의(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별도 신청 없이 지원

10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주변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통해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지원내용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장애인담당부서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 복지관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우선지원

2.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장애인담당부서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 체육시설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등

2. 지원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장애인담당부서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 심부름센터

1. 지원대상

시각장애인 등

2. 지원내용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민원업무대행(관공서 등), 직장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등 각종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문의(☎02-6925-1114)

수화통역 센터

1. 지원대상

청각·언어장애인 등

2. 지원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시 출장 수화통역, 일반인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농아인협회 문의(☎02-461-2261~2)

11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

일상 속의 다양한 요금 감면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해 드립니다.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월 3만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비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대한항공 ☎1588-2001)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 - 4~6급 장애인 20% 감면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감면 내역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장애인(1~3급) 50% 감면 - 경증장애인(4~6급)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 하는 보호자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발급은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은 주민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1~3급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전기요금 감면(월 8천원 한도, 1~3급)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 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1~3급 장애인	• 질서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1~3급)	사이버경찰청 (☎182)
기타	등록 장애인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 (☎1544-7788)

보훈대상자 지원서비스

국가를 위해 희생이나 공헌을 하셨나요?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01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 보훈급여금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그 유족

2.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따라 매월 16만 7천원~50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지원대상

상이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지원내용

상시 간호수당은 매월 222만 8천원, 수시 간호수당은 매월 148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지원대상

보상금을 지급받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및 유족 사망 시 그 친족 중 상속인

2. 지원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천원~326만 8천원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이 때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의 종결적 급부 및 장제보조비 성격을 가집니다.

구분	금액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만 7천원 ~ 326만 8천원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만 7천원 ~ 226만 1천원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만 7천원 ~ 170만 4천원
재일학도의용군	112만 7천원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종결시)	112만 7천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중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

2. 지원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수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

- 3인 이하 가족 : 16~22만원
- 4인 이상 가족 : 21~27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무공 영예수당

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이며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2. 지원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금액	28만원	27만 5천원	27만원	26만 5천원	26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 지원대상

애국지사

2. 지원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3급	4급	5급	
월지급금액	155만원	128만원	115만원	105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영주귀국 정착금

1. 지원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 유족: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귀화적에 기재된 자)

2. 지원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7천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1.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주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7천만원
	2. 정착금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가.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4천 5백만원
	나.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5천 5백만원
	다.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7천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유족 수권자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보상금

1. 지원대상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전투경찰 등의 유족과 전투 또는 복무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전투경찰 등*

* 전투경찰 등 : 전투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2. 지원내용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전투경찰 등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전투경찰 등이 전투 또는 복무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주 하는 질문

● 6.25때 군인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형님의 사망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해 군인이 사망한 당시의 유족 중 동일 호적내의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순위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사망사실이 유가족에게 통지된 지 5년이 경과되거나 호적이 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정리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6.25때 사망하였으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 유해발굴 등으로 전사사실을 안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국방부 훈령 '순직재분류자 등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지침'에 의거 지급)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위로금

1.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2. 지원내용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인명피해 : 사망·실종 500만원, 부상 30만원
- 주택피해 :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 공동이용시설 피해 : 대규모 500만원, 일부 250만원
- 기타 재산 피해 : 20~5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25자녀수당

1. 지원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로 '98.1.1. 이후 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선순위 자녀 1인

2. 지원내용

- 제적자녀(유족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자녀로 보상금을 받던 중 생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종결된 사람)에게 매월 114만 1천원을 지급합니다.
- 승계자녀(최장 '97년도까지 모 또는 조부모가 보상금을 지급받다가 사망 후 순위가 변경된 사람)에게 매월 97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1. 지원대상

월남전 및 국내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지원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47만 9천원	114만 9천원	92만 3천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 후유증 수당

1. 지원대상

월남전과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제대한 사람 중 고엽제로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사람 중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지원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83만원	61만 3천원	40만 2천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참전 명예 수당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만원, 장제보조비*는 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장제보조비는 국립묘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1. 지원대상

- 국비진료 대상 :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환자 등과 같이 신체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대상 :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가족 등 직접적인 희생이 없는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2. 지원내용

- 국비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감면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30~6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종류	내용
보훈병원진료	5개 보훈병원 직접 진료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전문위탁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 등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 곤란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하여 받는 진료
위탁병원진료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비진료대상자와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이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
보철구 지급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취형·장착해 드리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 보훈병원 :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② 보훈지원-지원안내 → ③ 의료지원 → ④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02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 생활안정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재가복지 지원

1. 지원대상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곤란한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국가 보훈처에서 생활수준 기준을 정함)

* 만 65세 미만일지라도 보훈병원 가정간호 대상자 등은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주 1~2회 보훈섬김이가 자택을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돕고, 식사 수발, 병원동행, 노인·의료용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memo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지원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정도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2.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 80%
- 그 외 유공자 및 유족(자녀 제외) : 40%(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60%)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자 : 60%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 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65세 이상 또는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 요양등급(시설 업소)판정을 받은자

※ 단, 주간보호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합니다.(시설급여 200인, 주간보호 25인)

※ 공헌과 희생의 정도와 생활수준 고려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지원 (80/60/40/0%)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요양원에 입소 신청

- 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0
- 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00
- 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85
- 대구보훈요양원 ☎053-606-3000
- 대전보훈요양원 ☎042-829-3000
- 남양주보훈요양원 ☎031-579-7000

국가유공자 등 양로지원

1. 지원대상

- 의지할 곳이 없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자녀 제외)
- 상이유공자(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 그 외 기타 유공자 및 유족(남성 65세 이상, 여성 60세 이상)

2. 지원내용

- 양로지원대상자가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시까지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 사망시 창훈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양육지원

1. 지원대상

의지할 곳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단, 독립유공자는 미성년 손자녀 포함)

2. 지원내용

성년이 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대학까지 교육을 지원하며 생필품, 취업알선 및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병원 진료

1. 지원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2. 지원내용

대상	세부 지원내용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12.7월 이후 등록신청한 7급 상이자 중 부상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시 20% 본인부담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를 통해 팔보조기, 보청기 등 보철구 지원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제대군인 등	본인부담 진료비 30~60% 감면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memo

위탁병원 진료 (시·군별 지정 의료 기관)

1. 지원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유족 1인

2. 지원내용

대상	세부 지원내용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 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12년 7월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 중 부상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시 20% 본인부담
건강보험가입 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 수권유족 1인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제외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 대상자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고·중·경도)

2. 지원내용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교통시설 이용 지원

1. 지원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2. 지원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1.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

2. 지원내용

주택구입·임차(전·월세)·개량, 사업(창업), 농토구입, 생활안정자금 등을 연 2~3% 저금리로 300~6,00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20년 상환)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은행 문의 후 신청(☎1599-9999)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12.7.1. 이후 등록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2. 지원내용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비를 지원합니다.
• 공무원·교사 임용시험, 어학시험 등을 위한 학원 수강료 연 50~100만원 지급
※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지원방법 등 확인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수강시 장려금 월 4만원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12.7.1. 이후 등록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2. 지원내용

취업지원 방법에는 국가기관 및 일반기업체 등에 특별채용 및 특별고용하는 방법과 채용시험 시 가점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특별채용 : 국가기관 등 일반직공무원* (기능공무원 포함) 정원의 15%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채용
* 일반직공무원 : 방호, 운전, 위생 등 일부 특별채용 직렬
• 보훈특별고용 : 일반기업체 등의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상 (공기업체 등은 1% 가산)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의무고용
• 가점지원 :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10%를 가점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1. 지원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하고 전·퇴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

2. 지원내용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 등에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받아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지원

1. 지원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지원내용

주택구입, 사업,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3~4% 저금리로
300~6,00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3~20년 상환)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은행 문의 후 신청(☎1599-9999)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1. 지원대상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구제)를 결정한 사람

2. 지원내용

변호사 보수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 지원과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 지원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을 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2. 지원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25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 중에 취·창업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vnet.go.kr>)
- 서울센터(☎1588-2339)
- 경기북부센터(☎1577-3883)
- 경기남부센터(☎1577-3883)
- 부산센터(☎1577-7339)
- 대전센터(☎1577-2339)
- 대구센터(☎1577-6339)
- 광주센터(☎1577-8339)

03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등 보훈장학금 지급

- 1. 지원대상**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 2. 지원내용**
대학원 장학금은 학기별 최대 115만원, 특수교육대상자 장학금은 학기별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 대상자 등 수업료 등 면제

- 1. 지원대상**
중·고·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 지원내용**
대학과정(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기관 포함)까지 입학금, 수업료 등을 면제해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 대상자 등 학습보조비 지급

- 1. 지원대상**
중·고 과정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중·고·대학 과정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 2. 지원내용**
중학교 12만원, 고등학교 14~18만원, 대학교 23만원, 특수학교 52~7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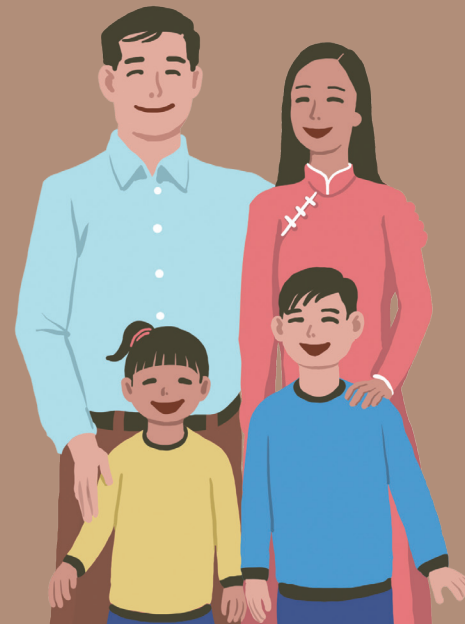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 1. 지원대상**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복학 한 자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일정 생활수준(국가보훈처에서 생활수준 기준을 정함) 이하인 사람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 2. 지원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 북한이탈 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01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지원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 청소년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만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
- 위기상황을 경험한 가족(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시도), 재난 등)로 정신적 상처를 경험한 사람 및 그 가족)

2.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학습도우미 및 생활가사도우미 파견,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의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건강가정지원 센터 운영

1. 지원대상

가정 생활에 도움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2. 지원내용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교육을 제공합니다.
※ 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 가정 내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을 실시합니다.
※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상담 등
-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 가족캠프, 가족사랑의날 행사, 건강가정캠페인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1577-9337),
홈페이지 <http://www.familynet.or.kr>

memo

법원연계 이혼위기 가족회복 지원

1. 지원대상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

2. 지원내용

이혼상담, 교육, 가족캠프, 아동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위기 가족이 겪는 문제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 **면접교섭권이란?**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599-3360)
- 부산 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7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053-745-4501~2)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032-875-1361)
- 대전 건강가정지원센터(☎042-252-9989)
- 안산YMCA(☎031-410-3570)
- 순천여성상담센터(☎061-753-9900)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

1. 지원대상

혼인가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2. 지원내용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및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4인 기준 228만 3,546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지원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원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센터 신청,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 상담(withmom.mogef.go.kr)

알려드립니다

● **한부모가족이란?** 복지서비스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4인 기준 228만 3,546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 지원내용**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학년 초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신청(☎1544-9654)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주택분양·임대)

- 1. 지원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2. 지원내용**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NH공사 신청(☎1600-100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1.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부자 및 모자가정, 미혼모자가정 등)
- 2. 지원내용**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인성교육 등), 의료혜택 등을 지원합니다.
※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 신청(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법률지원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법률 서비스)

- 1.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 지원내용**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대리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자녀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지원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상대방이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 지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문의 후 신청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만 4,860원) 이하 이면서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지급
- 검정고시학습비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최대 154만원까지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지급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 자립지원촉진수당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 이면서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센터 신청,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 상담(withmom.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 청소년 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 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10만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받은 가구는 아동 1인당 15만원을 받게 되며,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아동 1인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1.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산모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에 최대 12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본부로 우편 송부(☎1566-0133)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자주 하는 질문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memo

02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 1. 지원대상**
만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2. 지원내용**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 아동의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 지원 (주택 특별공급)

- 1. 지원대상**
무주택 다문화가족
- 2. 지원내용**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LH공사 문의 후 신청(☎1600-100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19만 5,717원)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2. 지원내용**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자활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참조(20p)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긴급복지지원 제도

-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고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다음의 국내체류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또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이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2.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장제·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참조(24p)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 1. 지원대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한국국적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국민 포함)
- 2. 지원내용**
우리말과 문화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과정(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이해과정(50시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혜택 : 이수자는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시간 단축
※ 전국 304개 기관에서 운영
- 3. 신청방법 및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신청
• 외국인종합지원센터(☎1345)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지원

- 1. 지원대상**
한국으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 2. 지원내용**
청소년 초기적응 지원,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적응 및 문화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가족부 문의 후 신청(☎02-2100-6280)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 1.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다문화·탈북 학생
- 2. 지원내용**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관련 상담·놀이 학습, 한국문화 체험 등의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 (활동시간) 연간 150시간 내외, 1일 4시간, 주당 10시간 이내(방학 중 20시간 이내)
- 3. 신청방법 및 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문의

자주 하는 질문

-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생 멘토의 급여는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지급되므로, 학부모님께서 별도로 부담하실 비용은 없습니다.

신소외계층 정보화교육

- 1.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2. 지원내용**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등 집합·방문 정보화 교육(무료)을 지원합니다.
※ 집합 정보화교육(3~12월), 방문 정보화교육(3~11월)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담당 문의 후 신청(☎064-909-301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2. 지원내용**
언어발달 정도 평가 후 어휘, 대화, 읽기 등 언어발달 촉진교육을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에서 인근센터 확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1. 지원대상**
 -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만 19세 미만)
 - 방문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아동기)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2. 지원내용**
 -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녀생활서비스 :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자녀생활서비스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신청)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에서 인근센터 확인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 2. 지원내용**
 -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이용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합니다.
 - 체류 관련 정보 제공, 임신 및 출산과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에서 인근센터 확인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

- 1.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여성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여성
- 2. 지원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한 사업장에 3개월 간 인턴 채용 지원금(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정규 고용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사업장 및 결혼이민여성에게 각각 6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 후 신청(☎1544-1199)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1. 지원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결혼이민여성
2. 지원내용
결혼이민여성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합니다.(과정당 2~3개월)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 후 신청(☎1544-1199)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

1.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2. 지원내용
일시보호, 상담, 의료, 법률, 출국 및 취업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다누리콜센터 문의(☎1577-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2. 지원내용
한국 생활정보, 통역(3자 통화 가능), 갈등해결 상담, 폭력피해 긴급 지원을 365일 24시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2.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취업교육 및 연계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멘토링, 자조모임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에서 인근센터 확인

탈북학생 교육 지원

1. 지원대상

초·중등학교 재학 탈북학생(북한, 제3국 출생)

2. 지원내용

탈북학생의 학습지도, 사회·문화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멘토링*
지원 및 기초 학력증진 등에 활용 가능한 탈북학생용 표준(보충)
교재** 보급

* 1인당 80만원 상당 교육 지원(15년 기준)

** 국어·수학(초1~2학년), 국어·사회·수학·과학(초3~6학년, 중1~3학년)

3. 신청방법 및 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문의

자주 하는 질문

●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탈북학생 멘토링과 탈북학생용 표준(보충) 교재 지원은 학
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문의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memo

03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1.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지원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문의 후 신청
- 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문의 후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

2. 지원내용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
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긴급전화 문의(☎1366)

성폭력 피해자 지원

1.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2.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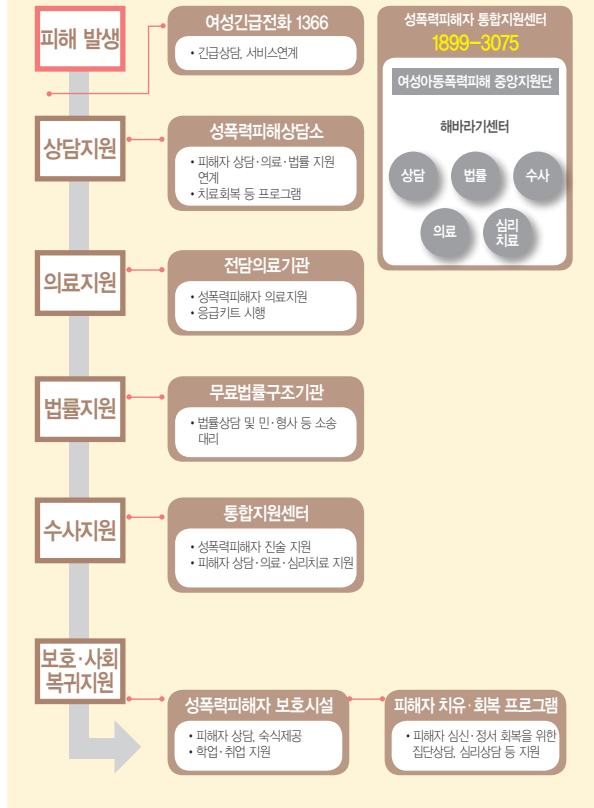
서비스	내용
의료 지원	- 성폭력 피해의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병 감염 여부 검사,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 질환 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 지원 - 피해로 입원한 환자 중 간병인 필요시 간병비 지원 - 사업 기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전담의료기관 등
법률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민사·가사·형사사건 변호를 무료로 제공 - 사업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법률지원 신청
돌봄 비용 지원	13세 미만 아동피해자 혹은 성폭력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연령 제한없이 1~3급)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가 돌봄서비스 이용시 비용 지원 - 사업수행기관 :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지자체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관 :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1899-3075)

알려드립니다

● 성폭력피해자 지원 체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2. 지원내용

-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의 피해신고·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직업훈련, 피해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1.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자

2. 지원내용

- 폭력피해자에 대한 긴급 상담과 구조를 지원합니다.
-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병원,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에 연결해 드립니다.
-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지원

1. 지원대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광역 17개, 기초 226개)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내 의료, 교육, 사법, 아동여성보호관련 단체 및 시설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계

2. 기능 및 역할

- 협력체계 구축
 - 아동·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
 - 아동·여성안전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예방지원
 -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 안전사업
 - 안전진단 및 안전지원(안전귀가 등)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위험환경 정비
 - 취약아동·여성보호지원
- 위기관리
 - 폭력위기 및 피해아동·여성 사례개입 및 관리

3. 신청방법 및 문의

해당 지자체

memo

04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및 가족, 사업주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1. 지원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2. 지원내용

구분	지원세부내용
요양 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환자에게 진찰·검사·약제·보조기·처치·수술 등 지원, 재활보조기 198개 품목 구입 및 수리비용 지급
휴업 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16년 고시 예정)
장해 급여	치료를 마친 후 몸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 ~ 7급(138일분) • 장해일시금 : 1급(평균임금 1,474일분) ~ 14급(55일분)
유족 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평균임금 365일분의 52~67%)
간병 급여	산재로 인한 상병 치료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16년 고시 예정)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 직업훈련지원비 등 지급

알려드립니다

●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도 영구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1. 지원대상

산재장해인(제1~7급), 상병보상연금수령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2. 지원내용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지원대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산재장해인(제1~9급), 상병보상연금수령자,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2. 지원내용

1세대당 2,000만원까지 각 용자종류별 한도 이내에서 대출해 드립니다.

구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	차량구입	사업자금
융자액		1,000만원				1,500만원	

※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자주 하는 질문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 한가요?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요양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를 함께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산재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케어센터 : 60세 이상 산재장해등급 제1~3급 결정자
- 강원케어센터 : 60세 이상 진폐장해인

2. 지원내용

- 경기케어센터 : 산재장해인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강원케어센터 : 진폐장해인에게 주거에 필요한 시설 및 일상생활의 편의 등 전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경기케어센터(☎031-359-0514)
- 강원케어센터(☎033-580-5262)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1. 지원대상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산재장해인 등

2. 지원내용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 지원대상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산재장해등급 1~12급 판정자 또는 판정 예상자

2. 지원내용

직업훈련비용(최대 12개월 이내 6백만원), 훈련수당(최대 1일당 최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1. 지원대상

- 다치기 전의 직장에 복귀를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제1~12급)
- 산재장해인(제1~12급)을 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지원내용

- 근로자 : 직장복귀에 필요한 정보, 작업능력평가 및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 : 직장복귀지원금(월 30~60만원, 최대 12개월), 직장적응훈련비(월 45만원, 최대 3개월), 재활운동비(월 15만원, 최대 3개월)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 1. 지원대상**
산재장해인 1~14급으로서 훈련 직종 또는 취득 자격증이나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자영업으로 창업 희망자
- 2. 지원내용**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전세점포를 지원합니다.
※ 연리 2% 이율, 최장 6년, 월세 200만원 이내
-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 1. 지원대상**
산업재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
- 2. 지원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재활멘토링, 재활스포츠클럽, 취미활동반 등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요양급여 (재활보조 기구)

- 1. 지원대상**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되어 보조기가 필요한 자
- 2. 지원내용**
 - 지급기준 :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 보조기구의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지급품목* : 재활보조기구 103개 품목(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83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품목 20개)

* 지급품목 종류 및 기준금액 확인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산재의료서비스 > 공단운영연구소 "재활공학연구소"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품목 안내" 클릭

- 지급시기 : 치료 종결시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구
기한이 경과하여 장치가 필요한 경우 품목별 내구 기한 경과
시마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적으
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치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
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
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알려드립니다

● 요양비(보조기) 청구시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구분	구비서류	청구권자	비고
현금급여 (요양비)	• 요양비청구서 또는 대체지급청구서 •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산재근로자 사업주 (대체지급시)	의료기관 날인
현물급여 (진료비)	• 진료비 청구서 및 개인별 진료비명세서 •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의료기관 대표	진료비 청구 (서면·EDI· 토탈월)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1.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중 월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

2. 지원내용

-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차등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 ※ 신규가입자란 최초 가입자,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 단절된 자(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를 말함
 - 기가입자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 기가입자란 시행일 현재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자, 3년 이내 한 번이라도 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자, 한 번이라도 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함

3. 신청방법 및 문의

-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자주 하는 질문

- 4대 보험 모두 지원 되나요 ?
 - 4대 보험 중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당면 지원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지원 신청이 있어야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5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 지원내용

건강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보험료 경감 22%(복지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최대 28%(농식품부)
 - ※ 소득·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최대 50%까지)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2. 지원내용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월 최대 40,950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농업인 안전보험

- 1. 지원대상**
만 15~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해당농림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사업자)
- 2. 지원내용**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NH농협생명(☎1544-4000), KB손해보험(☎1544-0114) 문의 후 신청

취약농가 인력지원 (가사도우미)

- 1. 지원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취약가구 및 읍면 소재 경로당
- 2. 지원내용**
연간 최대 12일, 경로당은 최대 24일까지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도우미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역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635)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 1. 지원대상**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으로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최근 3개월 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한함)
- 2. 지원내용**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1일 인건비 6만원 중 4만 2천원(70%) 지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역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635)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 1. 지원대상**
농업인(축산업 경영하는 농업인 포함),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예) 2헥타르 이하 농지 소유(또는 임차)한 농업인, 20톤 이하 어선 소유 또는 어업인으로 종사하는 자, 10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를 소유(또는 임차)한 임업인 또는 일정규모 이하의 양축인 등
- 2. 지원내용**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15년은 3.39%) 및 저축장려금 지급률*, 이자소득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15년 기준) 저소득 농어민은 연 6.0%~ 연 9.6%, 일반 농어민은 연 1.5%~ 연 2.5%
- 3. 신청방법 및 문의**
 -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방문 신청
 - 농·축협 고객행복센터(☎1588-2100)
 - 수협 고객만족센터(☎1588-1515)
 - 산림조합(☎02-3434-7222)

자주 하는 질문

- 농림어업인이나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 저축가입대상이라도 타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저축가입이 가능한가요?
- 결혼으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저축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 내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는 없으나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하시려는 분 명의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소유(또는 임차)한 농지가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평균성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학생

순위	대상자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 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3순위	• 특별추천자

2. 지원내용

당해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도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 지원대상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지원내용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객선 승선 시 주민등록증 제시
(해양수산부 ☎044-200-5773~4)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

1. 지원대상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본인부담 보험료를 최대 71%까지 지원합니다.
※ 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수협 문의 후 신청(☎1588-1515)

알려드립니다

- **어선원보험 당연(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보험의 당연(의무)가입대상이 2016년 1월 1일부터 '4톤 이상 어선 소유자'로 확대됩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2. 지원내용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보육시설)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문의(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80)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 수당

1. 지원대상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 지원내용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교육 지원

1. 지원대상
북한 이탈주민
2. 지원내용
 - 북한 학력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 장학금, 학습지원, 진로 및 진학상담, 법률제도, IT 등 교육을 돕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학력 인정은 통일부(☎02-2100-5785)로, 그 외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577-6635)으로 문의 후 신청

교육비 지원

1. 지원대상
초·중·고·대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 이탈주민
2. 지원내용
초·중·고·대학교 교육비와 대학 특례 편입학을 지원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통일부 하나원 문의 후 신청(☎031-670-9323)

취업 지원

1.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고용지원금(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4년간 지급합니다. ※ '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탈북민에게 적용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통일부 하나원 문의 후 신청(☎031-670-9323)

자산형성지원 (미래행복 통장)

1. 지원대상
'14.11.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
2. 지원내용
탈북민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02-3215-5881~4)

주택알선 지원

1.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2. 지원내용
영구·국민 임대주택을 알선(하나원 퇴소시 1회에 한함)하고,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통일부 하나원 문의 후 신청(☎031-670-9323)

08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노숙인 등 복지지원

- 1. 지원대상**
노숙인
- 2. 지원내용**
주거, 급식, 의료,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석면피해자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 1. 지원대상**
석면광산, 석면공장 인근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및 유족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지원내용

피해안정질병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 조위금	
원발성 악성종피종		1,314,130원	2,481,640원	37,224,600원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946,170원		18,612,300원	
석면폐증	1급				
	2급			630,780원	12,408,200원
	3급	315,390원		6,204,100원	

※ 모든 석면질병의 요양급여(치료비) 지원(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 120~500만원 한도)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신청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석면피해구제 홈페이지(www.adrc.or.kr)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 1. 지원대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 사할린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는 2세로 통칭
- 2. 지원내용**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매월 7만 5천원)를 지급합니다.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을 지원합니다.(2인 1가구 기준단가 17,700천원)
※ 국토교통부(나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비용을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 1세·2세 항공료(실비) 및 집기비품(1,400천원)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9, 3514) 및 대한적십자사 특수사업팀 (☎02-3705-3795)

알려드립니다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사업이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외교부(대한적십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지원

1. 지원대상

원폭피해자

2. 지원내용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수첩 미소지자에 한해 지원
-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원,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원
- 장제비 : 150만원
- 건강검진비 : 연 1회(35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대한적십자사 문의 후 신청(☎02-3705-370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 지원대상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 지원내용

신규등록시에는 특별지원금으로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며, 이후 매월 생활안정지원금(126만원 지원, '16년 기준)과 간병인 필요 시 실비를 지원해드리며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문의 후 신청(☎02-2100-6427~6433, www.hermuseum.go.kr)

진폐근로자 보호

1.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서 진폐에 걸린 근로자

2. 지원내용

진폐건강진단비용, 진폐위로금,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진폐 건강진단	• 진폐건강진단비 • 2차 정밀진단시 1일 5만원, 통원교통비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
진폐 위로금	• 진폐장해판정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1,040일분 • '10.11.21. 이전 장해판정자는 장해위로금(59~884일분), 진폐로 사망시 유족위로금(780일분)	진폐로 장해등급 판정시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 진폐장해근로자의 중·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	진폐장해 근로자의 자녀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한센 피해자 지원

1. 지원대상

한센인피해자

2.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 의료지원금 : 피해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간병비, 보조장구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에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개발제한 구역 내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1.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 세대

2. 지원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를 세대당 연간 60만원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1.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난민자녀 등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2. 지원내용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일정 범위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료 등(회 500만원 범위 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 각 시·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담당부서 (세종, 울산 제외), 사업수행의료기관
- 보건복지콜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은?

동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하며,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단,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풍수해보험

1. 지원대상

주택 소유자·세입자 또는 온실 소유자

2. 지원내용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 등) 및 지진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55~8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

* 보험기간 : 1년

* 보상내용 : 전파, 반파, 소파, 침수, 온실 비닐파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손해보험사
동부화재(☎02-2100-5103), 현대해상(☎02-2100-5104), 삼성화재(☎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보험금 예시(주택, 온실)

① 주택(소유), 온실

* 충남 홍성군 90% 보장형 기준(단독주택 80㎡, 온실 : 철재파이프하우스 500㎡)

구분	연간보험료	정부지원	국민부담	보험금(전파)
주택	일반가입자	44,800원	36,600원	7,200만원
	차상위계층	81,400원	61,900원	
	기초생활수급자	70,500원	10,900원	
온실	239,500원	131,800원	107,700원	434만원

② 주택(세입자·동산) * 충남 예산군 90% 보장형 기준(단독주택 80㎡)

구분	연간보험료	정부지원	국민부담	보험금(전파)
일반가입자	20,300원	11,600원	8,700원	720만원
차상위계층		15,700원	4,600원	
기초생활수급자		17,800원	2,500원	

※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지원내용

- 치료비 : 5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연 1,200만원, 총 3,000만원의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 심리치료비 : 정신과 치료비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제공합니다.
- 생계비 : 매달 범죄피해자 1인 50만원, 2인 가족 80만원, 2인 초과하는 가족의 경우 1인당 20만원씩 증액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 학자금 : 초등학교 50만원, 중학교 80만원, 고등학교·대학교 100만원을 학기당 1회씩 최대 연2회 지원합니다.
- 장례비 :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300만원을 상한으로 실비를 지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했을 경우

3. 신청방법 및 문의

검찰청 신청(국번없이 ☎1301)

memo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구 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생계를 유지 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20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	한국전력공사 ☎123 등	23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24
	취약·위기가족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사업본부 ☎02-3479-7616	26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26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 ☎1600-1004	27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 ☎1600-1004	27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 ☎1600-1004	28
	행복주택 공급	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28
	장기전세주택 임대	시·군·구청, LH공사 ☎1600-1004	29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시·군·구청, LH공사 ☎1600-1004	29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시·군·구청, LH공사 ☎1600-1004	30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군·구청, LH공사 ☎1600-1004	31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시·군·구청, LH공사 ☎1600-1004	31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출	우리은행 ☎1588-5000 국토교통부 ☎1599-0001	32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32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33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그린홈)	지자체 및 LH공사에서 자체 선정	34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34
	신재생에너지 지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031-260-4114	35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35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36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306 환경부 ☎044-201-6763	37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21	38

구 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시)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39
	보증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39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080-800-9001	40
	버팀목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40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080-800-9001	41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41
	전세자금 보증	각 은행 콜센터	42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43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44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희망드림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45
	미소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1600-3500	45
	햇살론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46
	바꿔드림론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47
	새희망출씨	한국이지론 ☎1644-1110	47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48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 하고 싶을 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	48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49
	양곡할인	보건복지콜센터 ☎129	49
	사랑의 그린PC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50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 고객센터 ☎1544-3412	51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	52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1350	56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 자리를 원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1350	57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1350	58
	자활근로	보건복지콜센터 ☎129	59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일모아 홈페이지 www.ilmoa.go.kr	59
	희망키움통장(I, II)	보건복지콜센터 ☎129	60
	내일키움통장	보건복지콜센터 ☎129	61
	근로장려금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62
	자녀장려금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63
여성이 일 자리를 원할 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64

구 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1350	65
	정년연장 지원	고용노동부 ☎1350	65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 ☎1350	66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용노동부 ☎1350	66
	장년 취업 인턴제	고용노동부 ☎1350	67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042-480-4387~8	68
	중장년취업아카데미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5	68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사회공헌 활동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43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02-6369-8987	69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고용노동부 ☎1350	70
	청년 취업아카데미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72	70
	해외취업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9997	71
	일·학습병행제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23	72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고용노동부 ☎1350	72
	취업사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73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76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보건복지콜센터 ☎129	77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77
	영양플러스	보건복지콜센터 ☎129	78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의료급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78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88-8700, 롯데카드 ☎1899-4282	79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바우처 ☎1566-0133	80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80
	요양비(출산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8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공단 ☎1355	8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81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82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83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1350	84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 포함)	고용노동부 ☎1350	8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고용노동부 ☎1350	85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 하고 싶을 때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고용노동부 ☎1350	86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금 (육아휴직 등 부여)	고용노동부 ☎1350	86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노동부 ☎1350	87

구 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 하고 싶을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설치비 :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2670-0411~9, 부산 ☎051-320-8181~6, 대전 ☎042-870-9110~6) 운영비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과	88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만 0~5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행복콜센터 ☎1566-0233	89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에듀콜센터 ☎1544-0079	90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행복콜센터 ☎1566-0233	91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돌봄서비스상담전화 ☎1577-2514	92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용 아동)	보건복지콜센터 ☎129	93
	시간제 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콜센터 ☎1661-9361	93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94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94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콜센터 ☎129	95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보건복지콜센터 ☎129	95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96
	영양플러스	보건복지콜센터 ☎129	9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96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97
	영유아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98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98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	보건복지콜센터 ☎129	99
	취학전 아동 단체 불소 도포	보건복지콜센터 ☎129	99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00
	입양아동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00
방과 후 돌봄 손길이 필요할 때	초등돌봄교실	재학 중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101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02-330-2831~3	102

구 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고교학비 지원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10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103
	급식비 지원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104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104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105
	국가장학금(I, II 유형,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06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07
	드림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08
	예술체육비전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08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09
	인문100년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10
	취업후상환학자금(돈돈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11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12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13
	학교우유급식	소속학교 신청	114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아동급식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1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재학중인 학교 및 교육청	115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182	116
	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	아동학대신고 ☎112	116
	학대피해 아동 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17
	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보건복지콜센터 ☎129	118
	드림스타트	보건복지콜센터 ☎129	118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740	119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전화 ☎1388	120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 상담전화 ☎1388	1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상담전화 ☎1388	121
	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02-3144-1223	122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여성긴급전화 ☎1366	122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해소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청소년 상담전화 ☎1388	123
	Wee 클래스 상담지원	Wee프로젝트 특임센터 ☎02-2057-8701~7	123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전화 ☎1388	124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상담전화 ☎1388	124

구 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전화 ☎1388	12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안전진단사업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콜센터 ☎1899-1021	126
	청소년 국제교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95	127
	청소년 활동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3	129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30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02-722-2585	132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36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보건복지콜센터 ☎129	137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138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043-719-7387	139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40
	중증질환 재난의료비 한시적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40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 제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141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보건복지콜센터 ☎129	142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건복지콜센터 ☎129	142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콜센터 ☎129	143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43
	선택 병·의원제	보건복지콜센터 ☎129	144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145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14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46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47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건강검진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48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정신건강 위기사담 ☎1577-0199	150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150
	재가암 관리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15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콜센터 ☎129	151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152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53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53

구 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기초연금 제도	국민연금공단 ☎1355	156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공단 ☎1355	157
	노후긴급자금 대부	국민연금공단 ☎1355	157
	주택연금 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158
	은퇴금융 아카데미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159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60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노인복지관·경로당 이용	별도 신청없이 이용	161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16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 02-704-4332	162
	고령층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064-909-3015	162
	온라인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정보화교육 ☎064-909-3021	163
치매가 걱정될 때	치매 검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64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165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때	노인실명 예방	보건복지콜센터 ☎129	166
	노인틀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166
	노인임플란트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167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168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 129	169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 129	17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 129	170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129	171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별 문의처	172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장애인연금	보건복지콜센터 ☎129	176
	장애수당	보건복지콜센터 ☎129	177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콜센터 ☎129	177

구 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78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78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79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79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콜센터 ☎129	180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건복지콜센터 ☎129	18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181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교육부 ☎044-203-6954	182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8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교육부 ☎044-203-6562	183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 ☎044-203-6560	183
	장애인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도우미 상담실 ☎1588-2670	184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 ☎041-537-1485	185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86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88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89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90
	직업능력개발지원 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91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92
장애인이 사회 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193
	근로지원인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9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31	19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	보건복지콜센터 ☎129	195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95
	고용관리 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96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96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도우미 상담실 ☎1588-2670	197
	장애인의료비	보건복지콜센터 ☎129	198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99
	장애인 보장구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199
장애인에게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검사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00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00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보조기구센터 ☎1670-5529	201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01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02

구 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장애인에게 의료 및 재활 자원이 필요할 때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129	202
	언어발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03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0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보건복지콜센터 ☎129	204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204
	장애인활동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콜센터 ☎129	205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보건복지콜센터 ☎129	206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LH공사 ☎1600-1004	206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07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보건복지콜센터 ☎129	207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0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129	208
	무료 법률구조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209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사업(시·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209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2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보건복지콜센터 ☎129	210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	211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21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중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행정자치부 ☎02-2100-3399	212
	상속세 상속 공제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213
	중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213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별도 신청없이 지원	213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건복지콜센터 ☎129	214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콜센터 ☎129	214
	장애인 체육시설	보건복지콜센터 ☎129	215
	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6925-1114	215
	수화통역센터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215
장애인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싶을 때	요금감면 제도	주민센터 등	216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일 때 (보훈급여금 지원)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0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0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1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1
	무공영예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2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2

구 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일 때 (보훈급여금 지원)	영주귀국 정착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3
	재해보상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4
	재해위로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5
	6.25자녀 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5
	고엽제환자 2세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6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6
	참전명예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6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7
	재가복지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8
	민간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9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보훈요양원에 입소신청 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0 - 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00 - 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85 - 대구보훈요양원 ☎053-606-3000 - 대전보훈요양원 ☎042-829-3000 - 남양주보훈요양원 ☎031-579-7000	229
	국가유공자 등 양로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0
	국가유공자 등 양육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0
	보훈병원진료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1
	위탁병원진료 (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2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3
	교통시설 이용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3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국민은행 ☎1599-9999	234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4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5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5
	장기복무제대군인 대부지원	국민은행 ☎1599-9999	236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 ☎1588-2339	237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장학금 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8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업료 등 면제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8
	국가보훈대상자 등 학습보조비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9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보조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9

구 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지원)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242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243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599-3360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 ☎051-330-3470 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구지부 ☎053-745-4501~2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인천지부 ☎032-875-1361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042-252-9989 안산YMCA ☎031-410-3570 순천여성상담센터 ☎061-753-9900	244
	지역별 미혼모·부자 가정기관 이용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244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245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246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주택분양·임대)	나공사 ☎1600-1004	24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247
	법률지원(자녀양육비이행지원 법률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247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248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바우처 ☎1566-0133 보건복지콜센터 ☎129	249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50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나공사 ☎1600-1004	25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251
	긴급복지지원 제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251
	사회통합프로그램(KIP)	외국인종합지원센터 ☎1345	252
	북한이탈 및 다문화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02-2100-6280	252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53
	신 소외 계층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담당 ☎064-909-3013	25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54
가족이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문화 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54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55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255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256
	다누리콜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56
	이주여성보호시설 이용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57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57
	탈북학생 교육 지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문의	258

구 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259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259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신고 ☎1899-3075	260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262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262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	해당지자체	263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4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5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경기케어센터 ☎031-359-0514 강원케어센터 ☎033-580-5262	266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6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7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7
	산재근로자 창업접점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8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8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9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70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7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271
	농업인 안전 보험	NH농협생명 ☎1544-4000 KB손해보험 ☎1544-0114	272
농어업인 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취약농가 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협중앙회 ☎02-2080-5635	272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농협중앙회 ☎02-2080-5635	272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농·축협 고객행복센터 ☎1588-2100	273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74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 ☎044-200-5773~4	27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수협은행 ☎1588-1515	275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80	275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보건복지콜센터 ☎129	275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의사상자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76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 기준 서비스 목록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북한이탈 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사회보장 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277
	정착금 지원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3	277
	교육 지원	학력인정 : 통일부 ☎02-2100-5785 그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77-6635	278
	교육비 지원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3	278
	취업 지원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3	278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 ☎02-3215-5881~4	279
	주택알선 지원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3	279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80
	석면피해자 지원 (석면 피해 구제급여)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280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대한적십자사특수사업팀 ☎02-3705-3795	281
	원폭 피해자 지원	대한적십자사 ☎02-3705-3705	28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여성가족부 ☎02-2100-6427~6433	282
	진폐근로자 보호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83
	한센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83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284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84
	풍수해보험	동부화재 ☎02-2100-5103 현대해상 ☎02-2100-5104 삼성화재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285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검찰청 ☎1301	286

임신·출산

구분	사업명	페이지
임신준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6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83
임신기간	영양플러스	78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77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7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	78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5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8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77
출산비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8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78
	요양비(출산비) 지원	81
	출산비용 지원	80
출산이후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9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9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1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95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85
	육아종합지원센터	94
	육아휴직 급여 지원	84
	임양숙려기간 모자지원	82
	출산 전·후 휴가급여(유산·사산 포함)	85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86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86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87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영유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육비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1
	가정위탁아동 지원	100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250
	만 0~5세 보육료 지원	89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90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93
	시간제 보육료 지원	93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179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180
	장애아동 양육수당	180
	장애아동수당	177
건강	건강검진 제도	148
	건강보험 제도	136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97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9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96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95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46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95
	언어발달 지원	203
	영유아 건강검진	98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	99
	취학전아동 단체 불소 도포	99

영유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94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275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16
	아이돌봄 서비스	92
	육아종합지원센터	9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81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88
입양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82
	입양아동지원	100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01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78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51
	온라인 정보화교육	16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96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아동·청소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육비지원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180
	장애아동수당	177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45
건강	건강검진 제도	148
	건강보험 제도	136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97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 치료비지원)	123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46
교육	고교학비 지원	103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104
	급식비 지원	10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03
	스포츠강좌이용권	52
	온라인 정보화교육	163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79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8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4
	지역아동센터 지원	101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13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02
	초등돌봄교실	101
	학교우유급식	114
교육_역량강화	청소년 국제교류	127
	청소년 특별 지원	120
	청소년 활동지원	129

아동·청소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호(돌봄/안전)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1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81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25
	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	116
	학대피해아동쉼터	117
입양	가정위탁아동 지원	100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82
	입양아동지원	100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01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78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51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자립	드림스타트	118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18
심리지원	WEE 클래스 상담지원	123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122
	청소년성문화센터	122
	청소년전화 1388	124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119
특수상황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120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24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21

청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교육	국가근로장학금	107
	국가장학금 [I,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106
	드림장학금	108
	예술체육비전장학금	108
	온라인 정보화교육	163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09
	인문100년장학금	110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113
교육_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111
고용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72
	내일배움카드제	58
	일·학습병행제	72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70
	청년 취업아카데미	70
	취업사관학교	73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II 유형)	57
	해외취업지원	71
주거	기존주택 매입임대	29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0
	행복주택 공급	28
주거_대출	버팀목대출보증	4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40
	전세자금 보증	42
	주거안정 월세대출	41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	41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건강	건강검진 제도	148
	건강보험 제도	136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145

중장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64
	내일배움카드제	58
	사회공헌 활동 지원	69
	임금피크제 지원금	66
	장년 취업 인턴제	67
	정년연장 지원	65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66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59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68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II 유형)	57
생활지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44
	근로장려금	62
	긴급복지지원제도	24
	자녀장려금	63
주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국민임대주택 공급	27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29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0
	영구임대주택 공급	27
	장기전세주택 임대	29
주거_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39
	버팀목대출보증	4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40
	보증자리론	39
	전세자금 보증	42
	주거안정 월세대출	41
	주거안정 월세대출보증	41
교육	온라인 정보화교육	163
건강	건강검진 제도	148
	건강보험 제도	136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145
기타	노후준비서비스	157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244

노령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기초연금 제도	156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노후긴급자금 대부	157
	노후준비서비스	157
	은퇴금융 아카데미	159
	주택연금 제도	158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건강	건강검진 제도	148
	건강보험 제도	136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139
	노인실명 예방	166
	노인임플란트 지원	167
	노인틀니 지원	166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170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68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145
	치매 검진 지원	164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65
고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65
	노인 사회활동 지원	160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61
	사회공헌 활동 지원	69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68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59
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국민임대주택 공급	27
	기존주택 매입임대	29
	영구임대주택 공급	27

노령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주거	장기전세주택 임대	29
	행복주택 공급	28
주거_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39
	버팀목대출보증	4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40
	보증자리론	39
	전세자금 보증	42
	주거안정 월세대출	41
	주거안정 월세대출보증	41
돌봄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53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153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170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169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171
	취약농가 인력지원(가사도우미)	272
사회참여	고령층 정보화교육	162
	노인복지관·경로당 이용	161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162
	온라인 정보화교육	163

장애인

구분	사업명	페이지
건강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203
	발달재활서비스	202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01
	장애검사비 지원	200
	장애인의료비	198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20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183
양육	아이돌봄 서비스	92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179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7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81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180
	장애아동 양육수당	180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78
	장애아동수당	177
교육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183
	발달장애 공공후견 서비스	208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시·청각 장애인용 TV)	209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82
	장애인 정보화교육	184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211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85
주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207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206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무료 법률구조제도	209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210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12
	장애인 요금감면 제도	216
	의료급여 제도	141
	장애수당	177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99
	장애인 등록진단비	200
	장애인 상속세 상속 공제	213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208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21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93

장애인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13
	장애인연금	17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21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13
돌봄 (안전, 활동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196
	수화통역센터	215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206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269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8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20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201
	장애인 심부름센터	21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20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14
	장애인 체육시설	215
	장애인 활동지원	205
	장애인보장구 급여	199
	장애인복지관	214
임신출산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197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50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4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78
고용	출산비용 지원	80
	고용관리 비용 지원	196
	장애인 일자리 지원	189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186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	195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192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지원	190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195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18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94

한부모

구분	사업명	페이지
양육	법률지원(자녀양육비이행지원 법률 서비스)	247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45
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5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248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46
주거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주택분양·임대)	24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247
생활지원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	242
	긴급복지지원제도	24
	의료급여 제도	141
돌봄 (안전, 활동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	244
	취약·위기가족지원	26

저소득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37
	근로장려금	62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	23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51
	양곡할인	49
	의료급여 제도	141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43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142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142
	자녀장려금	63
	새희망홀씨	47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43
생활지원_출산	출산비용 지원	80
건강	재가암 관리	151
교육	고교학비 지원	10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5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104
	급식비 지원	104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0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03
	사랑의 그린PC	50
	스포츠강좌이용권	52
	아동급식지원	114
건강	학교우유급식	114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43

저소득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	자활근로	59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II 유형)	57
고용_자립	내일키움통장	6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18
	희망키움통장(I, II)	60
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기존주택 매입임대	29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0
	영구임대주택 공급	27
	장기전세주택 임대	29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31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31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3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34
	슬레이트 처리 지원	33
주거환경개선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35
	에너지바우처	36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38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출	32
돌봄 (안전, 활동지원)	취약·위기가족지원	26

다문화(새터민)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277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277
	의료급여 제도	141
	다누리콜센터	256
생활지원_기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255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52
	이주여성보호시설 이용	257
	자신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279
보육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250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254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25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254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257
	북한이탈 및 다문화청소년 지원	252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278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278
	사랑의 그린PC	50
	신 소외 계층 정보화교육	25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132
	탈북학생 교육 지원	258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256
고용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255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278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279
주거	다문화 가족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250

건강

구분	사업명	페이지
의료비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259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8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6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98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 치료비지원)	12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96
	산정특례 제도	140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95
	선택 병·의원제	144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145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46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284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43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142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142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0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46
건강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138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139
	장애인 활동지원	205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50
건강_노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53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153
	노인실명 예방	166
	노인임플란트 지원	167
	노인틀니 지원	166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68

건강

구분	사업명	페이지
건강_노인	치매 검진 지원	164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65
건강_영유아아동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97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95
	영유아 건강검진	98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	99
	취학전아동 단체 불소 도포	99
건강증진	재가암 관리	15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51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50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심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203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150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상담센터) 운영	119

고용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65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64
	사회공헌 활동 지원	69
	자활근로	59
	장년 취업 인턴제	67
	장애인 일자리 지원	189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59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70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188
	해외취업지원	71
	노인 사회활동 지원	160
노인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68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72
취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58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267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267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235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186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	195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6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94
	직업능력개발지원 훈련수당	191
	청년 취업아카데미	70
	취업사관학교	73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II 유형)	57
고용안정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44
	근로장려금	62
	근로지원인 지원	194
	실업급여	56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284

고용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85
	육아휴직 급여 지원	84
	일·학습병행제	72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43
	임금피크제 지원금	66
	자녀장려금	63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96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195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270
	정년연장 지원	65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66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45
	출산 전·후 휴가급여(유산·사산 포함)	85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86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86
창업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87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268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192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지원	190

주거

구분	사업명	페이지
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국민임대주택 공급	27
	기존주택 매입임대	29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0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
	영구임대주택 공급	27
	장기전세주택 임대	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206
	다문화 가족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250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31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31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주택분양·임대)	246
	행복주택 공급	28
주거_수리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34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3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34
	슬레이트 처리 지원	33
	신재생에너지 지원	35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35
	에너지바우처	36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38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32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출	32
주거_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39
	버팀목대출보증	4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40
	보증자리론	39
	전세자금 보증	42
	주거안정 월세대출	41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	41
주거_보호	이주여성보호시설 이용	257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207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208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247

교육

구분	사업명	페이지
미취학	가정양육수당 지원	91
	가정위탁아동 지원	100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275
	만 0~5세 보육료 지원	89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90
	시간제 보육료 지원	93
	아이돌봄 서비스	92
	고교학비 지원	103
초·중·고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104
	급식비 지원	104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05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03
	사랑의 그린PC	50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93
	지역아동센터 지원	101
	초등돌봄교실	101
	탈북학생 교육 지원	258
	학교우유급식	114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46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183
	언어발달 지원	203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82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82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179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79
	장애인 정보화교육	184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85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183

교육

구분	사업명	페이지
노인	고령층 정보화교육	162
다문화	다문화 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25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254
	신 소외 계층 정보화교육	253
기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126
	온라인 정보화교육	163
	일·학습병행제	72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보조	239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107
	국가장학금[1,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106
	드림장학금	108
	예술체육비전장학금	108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09
	인문100년장학금	110
대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113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111

문화

구분	사업명	페이지
노인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162
아동청소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51
	스포츠강좌이용권	52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13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4
장애인	청소년 활동지원	129
	장애인 체육시설	215

서민금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계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44
	노후간접자금 대부	157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265
	새희망홀씨	47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43
	햇살론	46
주거자금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39
	버팀목대출보증	4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40
	전세자금 보증	42
	주거안정 월세대출	41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	41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출	32
고용지원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용자·지원	190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45
학자금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113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111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48
	미소금융	45
	바꿔드림론	4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48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6.25자녀 수당	225
	고엽제환자2세수당	226
	고엽제후유의증수당	226
	교통시설 이용 지원	233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233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장학금 지급	238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업료 등 면제	238
	국가보훈대상자 등 학습보조비지급	239
	국가유공자 대부 지원	234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220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220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221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221
	국가유공자 등 양로지원	230
	국가유공자 등 양육지원	230
	국가유공자 등 재해위로금	225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235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지원	23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227
	독립유공자 등 영주귀국 정착금	223
	무공영예수당	222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229
	보훈대상자 위탁병원진료 (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232
	보훈병원진료	231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229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22
	재가복지지원	228
	참전명예수당	226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대부지원	236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보조	239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235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237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236
의사상자	의사상자 지원	276
	재해보상금	224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281
원폭피해자	원폭 피해자 지원	282
위안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28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259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259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122
	성폭력 피해자 지원	260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	26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26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262
	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	116
	학대피해아동쉼터	117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264
산재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268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265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265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267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267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268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266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266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273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71
농어업인, 도서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271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207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113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농어업인, 도서민	농업인 안전 보험	272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275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275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27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275
	취약농가 인력지원(가사도우미)	272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272
입양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82
	입양아동지원	100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01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78
노숙인	노숙인 등 복지 지원	280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152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138
	산정특례 제도	140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	14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46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KIPP)	252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284
결핵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147
석면피해자	석면피해자 지원(석면 피해 구제급여)	280
진폐	진폐근로자 보호	283
한센	한센 피해자 지원	283
풍수해	풍수해보험	285
알코올 등 중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51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284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286

주요기관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주요기관	연락처
BC카드	☎1899-4651
KB손해보험	☎1544-0114
LH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LH공사	☎1600-1004
NH농협생명	☎1544-4000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SH공사	☎1600-3456
Wee프로젝트특임센터	☎02-2057-8701~7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검찰청	☎1301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182
고용노동부	☎1350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국립재활원장애인운전자원과	☎02-901-1553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740
국립특수교육원정보지원과	☎041-537-148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은행	☎1599-9999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
국토교통부	☎1599-0001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주요기관	연락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농·축협고객행복센터	☎1588-2100
농림축산식품부	☎1577-1020
농협중앙회	☎02-2080-563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042-252-9989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	☎032-875-136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대한적십자	☎02-3705-3705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동부화재	☎02-2100-5103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599-3360
롯데카드	☎1899-4282
문화누리고객센터	☎1544-3412
미소금융중앙재단	☎1600-3500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02-6369-8987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	☎051-330-347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77-6635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0133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삼성카드	☎1588-8700

주요기관	연락처
삼성화재	☎02-2100-5105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397
성폭력피해신고	☎1899-3075
수협은행	☎1588-1515
순천여성상담센터	☎061-753-9900
시간제보육콜센터	☎1661-9361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
실종아동보호전문기관	☎02-777-0182
아동학대신고	☎112
아이돌봄서비스상담전화	☎1577-2514
아이행복콜센터	☎1566-0233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 관리기준콜센터	☎1899-1021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에듀콜센터	☎1544-0079
여성가족부	☎02-2100-6000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외국인종합지원센터	☎1345
우리은행	☎1588-5000
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02-722-2585
장애인보호조기센터	☎1670-5529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제대군인지원센터	☎1588-233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주요기관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	☎080-800-9001
청소년상담전화	☎1388
하나원	☎031-670-9323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02-3144-1223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 사업본부	☎02-3479-7616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02-704-433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43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6925-1114
한국에너지관리공단	☎031-260-4114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21
한국이치론	☎1644-1110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3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95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306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행정자치부	☎02-2100-3399
현대해상	☎02-2100-5104

펴 낸 곳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정보원

발 행 일 2016년 2월

디 자 인 (주)활로컴

ISBN 979-11-86408-01-8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562-01



대한민국 정부